

APEC 水産分野 早期自由化의 影響과 對策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머 리 말

1997년 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제9차 회의에서 水産物 등 9개 분야에 대해 1999년부터 早期自由化(관세철폐)할 것을 결의한 이래 우리 정부에서도 海洋水産部와 外交通商部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하여 금년 11월 말레이시아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5개 품목은 조기자유화에서 제외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272개 품목은 1999~2005년간 關稅를 철폐(무세화)하며, 민감품목 43개에 대해서는 2006~2010년간 無稅化를 추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조기자유화 문제가 금년 APEC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문제는 世界貿易機構(WTO)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는데 WTO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해도 기본 골격은 APEC에서 논의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든 관세철폐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국가 전체로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環境保全 등 경제외적 요인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기반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조기자유화 실현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APEC의 現況과 早期自由化 추진과정, 조기자유화로 인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조기자유화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 국가 전체로는 다소의 社會的 剩餘를 증가시키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5개 품목만 조기자유화에서 유예할 경우 국내 수산물총생산의 10.2%에 해당하는 4,509억원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하고 국민식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몇몇 沿近海漁業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후 조기자유화 협상에 대비한 分野別 協商戰略과 함께 수입관리 및 수출증대방안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

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내용의 하나인 조기자유화 유예품목 선정결과는 우리 정부의 공식안으로 채택되었고, 조기자유화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본 연구는 당 개발원 海事政策研究室의 辛英泰 副研究委員, 鄭明生 責任研究員, 馬林永 研究員, 安宰賢 研究員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의 정재홍 과장님, 전영식 서기관님, 장재동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연구 컨소시엄 연구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글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의견이며, 당 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洪承湧

第1章 序 論

1. 研究目的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1994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로 결정한 이래 1997년 제9차 캐나다 각료회의에서 15개를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로 선정하였고, 동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 중 수산물을 비롯한 9개 분야에 대해서 1999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수 차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 왔으나 1998년 제10차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 일본 등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실패, WTO 협상에서 이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전체 품목의 15%에 해당하는 48개 민감품목(HS 10단위 기준) 중 5개 품목을 제외한 43개 품목에 대해서 2006~2010년간 무세화를 추진하되 나머지 272개 품목(전체 품목의 85%)에 대해서는 1999~2005년간 관세를 철폐(무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 조기자유화가 타결되지 않아 다행이나 우리 안대로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조기자유화가 타결될 경우 우리 수산업계가 입는 피해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

우선 자료 및 문헌조사로서 APEC 조기자유화 추진과정과 국별 입장 등에 관한 자료는 주로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해 수집하였고, 기타 APEC 관련 문헌은 KIEP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집, 정리하였다.

다음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로 인한 영향분석에 있어서는 2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잉여 증가와 수출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생산자잉여 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사회적잉여 변화로 보았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간단한 계량분석을 병행하였고, 잉여변화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가격탄성치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의 편의상 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 있어 공식 통계와 HS 분류상의 통계간 분류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몇 단계의 자료변환 과정을 거쳤다.

240개 품목에 대한 잉여변화 분석결과는 몇 가지 국내외 요인(생산량, 생산액, 종사자수, 어업내 비중, 수입액, 관세징수액, 실행세율 등)과 함께 조기자유화 유보품목을 선정하는데 사용하였고, 어업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였으며, 시나리오(협상대안)별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어업별로 각 생산요소가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조기자유화에 대한 어업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조기자유화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 금후의 협상전략과 함께 수입관리 및 수출증대방안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第2章 APEC의 現況과 早期自由化

1. 現況

1) 조직 및 기능

APEC은 1989년 1월 '호크' 호주수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 창설을 제의하고 동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매년 현안을 상호협의하는 수준의 비공식적 협의체였으나 1993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 및 제1차 정상회의부터 본격적인 지역통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조직으로서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경제인의 모임인 태평양경제위원회(PBEC), 산·관·학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등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각국 대표가 모여 지역협력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이 회의가 최초이다.

APEC은 협의체의 성격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실무그룹위원회(Working Groups : W/G),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 MM), 정상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 : LM)로 올라가는 하의상달식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상회의의 공식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의"로 매년 1회 개최된다. 격식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없으며 회의결과는 간략한 형태의 공동선언문(Declaration 또는 Statement)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 선언문은 APEC의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각료회의는 연 1회 개최되는 APE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이 참석하며 정상회의의 의제를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각료회의 준비를 위해 해당 각료회의 주최국에서 연 4~5회 개최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기관으로 고위간부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APEC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통상관련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고위간부회의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설정되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 EC), 예산·행정위원회(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 BAC),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ES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 등 4개 위원회를 통해 10개분야의 실무그룹에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게 된다. 실무그룹은 간사국 제도로 운영되어 필요에 따라 연 1~3회 정도 개최하며 각 그룹별 간사가 논의를 주도한다.

10개의 실무그룹은 수산(Fisheries W/G)을 비롯하여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Trade and Investment Data Review), 무역진흥(Trade Promotion), 산업과학 및 기술(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인력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에너지(Energy), 수송(Transportation), 해양자원보존(Marine Resource Conservation),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s), 관광(Tourism)으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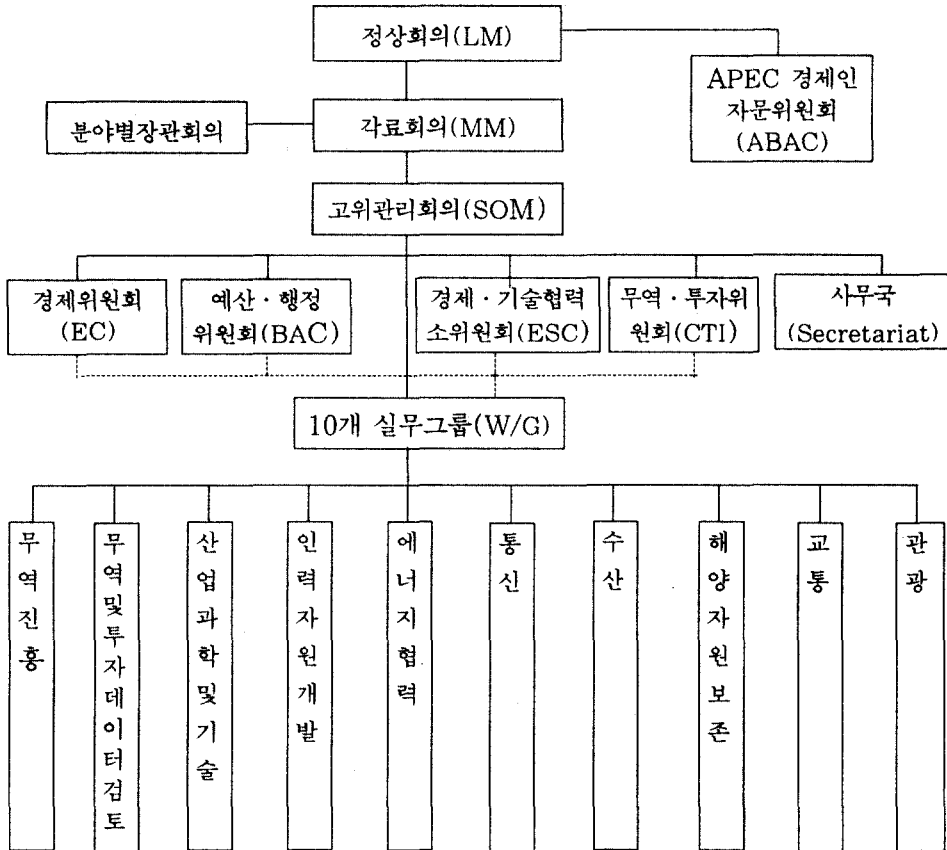
2) 일반경제 및 수산물 교역현황

(1) 일반경제 현황

출범당시의 가맹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 등 총 12개국이었으나 그 후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파푸아뉴기니아가 가세하여 모두 18개국이 되었다. 1997년 제5차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 3개국이 합류하여 1998년 11월 제6차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APEC은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체이지만 러시아의 가입 등으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림 II-1〉

APEC 조직도



회원국들은 크게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ASEAN(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칠레, 페루), 러시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회원국들은 현재 전세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는 63%, 교역면에서는 4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7년 국내총생산(GDP)은 4,426억달러로 APEC국가 중 6위로 나타났다.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조 79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일본이 4조 1,927억달러, 중국(9,177억달러), 캐나다(6,176억달러),

러시아(4,498억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불변 GDP 기준)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4%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필리핀, 중국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국가들은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표 II-1〉 참조).

또한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 유일한 경제협력체일 뿐 아니라 1997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의 68%, 우리나라 총해외투자의 65%를 차지하는 지역단위의 최대 경제파트너로 볼 수 있다.

한국의 對APEC 투자현황을 그룹별로 보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710백만달러(617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지대인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한 투자로서 455백만달러(211건)를 차지했으며, 기타 ASEAN, 대양주 순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

반면에 對한국 투자는 미국 등(NAFTA지대)이 33억 7,295만달러(19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ASEAN, 동북아지역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표 II-2〉 참조).

(2) 수산물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對APEC국가와의 수산물 교역액은 1997년말 현재 수출 13억 5,493만달러(총수출액의 90.8%), 수입 9억 2,027만달러(총수입액의 88.0%)로 무역수지는 4억 3,466만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출은 일본으로,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하고 있다. 對일본 수산물 수출은 총수출액의 68%, APEC 역내국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산물 수입은 총수입액의 26%, APEC 역내국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말 기준 무역수지는 일본과는 9억 5천만달러의 흑자를, 중국과는 1억 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표 II-3〉 참조).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다랑어류, 피조개 등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활돔, 농어, 갈치, 명란(냉동) 등이 있다. 중국으로는 오징어류, 피조개, 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냉동품인 조기, 갈치, 낙지, 피조개 등을 수입하고 있다.

〈표 II-1〉

APEC국가의 경제현황(1997년)

국가	구분	인구 (만명)	면적 (만km ²)	총교역액 (억달러)	GDP (10억달러)	경제성장률 ¹⁾ (%)
한	국	4,570	9.9	2,812	443	5.5
일	본	12,610	37	7,598	4,193	0.9
미	국	26,900	980	15,877	8,080	3.8
중	국	124,000	960	3,251	918	8.8
대	만	2,160	3.6	2,352	283	6.8
호	주	1,860	768	1,288	394	2.9
브루나이		31	5.800	51	5	4.6
인도네시아		20,000	190	951	215	4.6
말레이시아		2,160	33	1,573	98	7.8
필리핀		7,360	300	633	82	9.7
싱가포르		310	0.06	2,574	82	7.0
태국		6,000	51.4	1,186	154	-0.4
캐나다		3,020	997	4,653	618	3.8
칠레		1,450	757	366	77	7.1
홍콩		650	0.1	3,967	172	5.3
멕시코		9,428	196	2,202	403	7.0
뉴질랜드		380	27	286	65	2.9
파푸아뉴기니아		4.2	46	38	5	-
페루		2,441	129	170	65	7.2
러시아		14,800	1,700	1,550	450	-4.2 ²⁾
베트남		7,671	33	219	26	8.8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8.

ADB, *Financial Statistics*, 1998.

주 : 1) 불변GDP기준.

2) 1995년 기준.

〈표 II-2〉

한국과 회원국간 투자현황(1997년)

단위 : 천달러

국 가	투자규모	한국의 對APEC 투자		APEC국가 對한국 투자	
		건 수	투자금액	건 수	투자금액
동북아		617	710,462	235	357,999
ASEAN		122	441,380	54	772,069
대양주		35	63,826	8	5,655
NAFTA		211	455,610	194	3,372,945
남 미		6	20,382	-	-
러시아		3	7,901	10	603
APEC 총계(A)		994	1,699,561	501	4,509,271
총해외투자(B)		1,163	2,699,561	664	6,970,909
역내비중(A/B:%)		85.5	64.3	75.5	64.7

자료 : 외교통상부, 1998.

1998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이 된 러시아에 대한 수출액은 33백만달러(이 중 95%를 생선목, 즉 게맛살이 차지), 수입액은 176백만달러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1998년 9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조만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체결하기로 한 칠레와의 수산물 교역은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19백만달러이고 수출이 6만달러로서 무역수지는 18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3) 조기자유화 논의과정

(1) 무역·투자자유화

1989년 11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세계 무역자유화 문제의 논의를 시작으로 1990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무역자유화 선언을 채택, 초기의 경제기술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던 APEC 활동이 무역자유화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표 II-3〉

한국의 對APEC 수산물 교역현황(1997년)

단위 : 톤, 천달러

국가	구분	수 출		수 입		수 지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일	본	189,480	1,017,530	27,235	71,650	945,880
미	국	21,523	70,049	62,268	130,163	- 60,114
중	국	131,722	114,393	115,296	271,543	- 157,150
대	만	3,093	10,099	3,328	13,032	- 2,933
호	주	801	3,921	342	3,094	827
브	루 나 이	26	69	-	-	69
인	도 네 시 아	6,102	3,446	8,154	21,018	- 17,572
말	레 이 시 아	1,593	22,501	3,171	7,525	14,976
필	리 핀	9,168	4,391	6,522	20,255	- 15,864
싱	가 포 르	4,288	9,189	2,100	9,591	- 402
태	국	55,871	45,871	1,160	67,784	- 21,913
캐	나 다	1,309	7,217	5,363	17,335	- 10,118
칠	레	18	60	16,480	18,534	- 18,474
홍	콩	1,301	4,571	585	2,727	1,844
멕	시 코	49	293	25,804	39,550	- 39,257
뉴	질 랜 드	5,346	7,137	11,066	18,990	- 11,853
파	푸아뉴기니아	1,699	983	17	158	825
페	루	11	15	15,529	12,908	- 12,893
러	시 아	12,633	32,903	122,204	176,108	- 143,205
베	트 남	431	296	11,330	18,306	- 18,010
기	타 국 가	62,626	137,654	73,927	125,203	12,451
APEC국가		446,464 (87.7%)	1,354,934 (90.8%)	448,454 (85.8%)	920,271 (88.0%)	434,663
세계총계		509,090	1,492,588	522,381	1,045,474	447,114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1997.

그 후 1991년 제주도 고위관리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비공식그룹(Informal Group on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 RTL)”을 설치키로 합의하였고, 제3차 각료회의(서울)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방안에 대한 RTL의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1993년 제5차 각료회의(시애틀)에서는 APEC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선언(Declaration o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을 채택하면서 비공식그룹이던 RTL을 무역투자위원회(CTI)로 승격하였다.

무역투자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1994년 제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1995년 제3차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 OAA)이 채택되었고,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제4차 필리핀 마닐라 정상회의에서는 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 MAPA)이 승인됨으로써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자유화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MAPA는 각 회원국의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TILF)를 위한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과 공동실행계획(Common Action Plan : CAP) 및 경제·기술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 조기자유화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TILF)의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APEC 회원국들이 자발성과 신축성에 기초하여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 목표보다 더욱 빠른 시기 내에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즉 EVSL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개방적 무역·투자체제 확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

게 제시되어 1996년 11월 제4차 수빅(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조기자유화 대상 분야를 발굴 추진토록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7년 5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발적 조기자유화 분야를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고위관리들로 하여금 1997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 전까지 분야 선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1997년 8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캐나다)에서는 1차로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30개 산업의 61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0월의 특별고위관리회의(싱가포르)를 통하여 61개 대상분야를 41개 분야로 통합하여 조기자유화 대상분야가 선정되었다(〈표 II-4〉 참조).

1997년 11월 제9차 캐나다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지지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 이익균형 등을 감안하여 15개 분야를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5차 캐나다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 중 9개 분야에 대하여 1998년 6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것과 나머지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자발적 참여(Voluntarism) 및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자발성이란 각 회원국의 참여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함을 의미하며, 신축성이란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및 유보품목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II-5〉 및 〈표 II-6〉 참조).

1998년 6월 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조기자유화 대상품목, 목표세율, 이행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신축성의 원칙에 의한 이행기간의 연장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1994년 보고르선언을 시작으로 이후 조기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9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수산물과 임산물의 조기자유화를 반대하고 나온 일본 등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였고, WTO에서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표 II-4〉

회원국별 제안분야

회 원 국	제 안 분 야
한 국	정부조달, 철강 및 철강제품, 석유화학
일 본	투자, 환경제품, 필름, 고무 및 고무제품, 수송장비, 과학기술장비, 비료, 약기
미 국	화학제품, 의료기기 및 서비스, 자동차 및 부품, 유지제품, 통신 및 정보기술, 에너지 관련제품 및 서비스, 환경기술 및 서비스, 목재 및 종이, ITAII
중 국	완구, 자전거, 회계서비스
대 만	환경기술 및 장비
호 주	에너지, 비철금속, 식품
브 루 나 이	어류 및 어류제품
인 도 네 시 아	어류, 임산물, 섬유, 의류, 신발류
말 레 이 시 아	식물성기름
필 리 핀	-
싱 가 포 르	화학, 가전제품, 정밀 엔지니어링 및 기기, 의료기기 및 과학기술기기
태 국	어류 및 어류제품, 통조림 및 가공된 야채와 과일류, 천연 및 합성고무, 에너지, 보석, 쌀 및 관련제품, 의료기기
캐 나 다	민간항공기 및 관련제품, 맥주 및 맥주보리, 증류주, 환경제품 및 서비스, 비료, 어류 및 어류제품, 유지종자 및 유지종자제품,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목재제품
칠 레	-
홍 콩	완구, 소매관세
멕 시 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뉴 질 랜 드	목재 및 목재제품

자료 : 송유철, 「APEC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과제」, KIEP, 1998.

〈표 II-5〉

조기자유화 우선추진 분야

분 야	제 안 국	지 지 국	제 안 내 용
우선 추진 (9개)	수산물	브, 캐, 인, 뉴, 태 홍, 호, 말, 필, PNG, 싱, 미	• 관세·비관세 장벽철폐 • WTO규정에 합치되는 위생검역 조치
	완 구	중, 홍, 싱, 미 호, 캐, 뉴, 브, 인, 말, PNG, 대, 캐	• 관세·비관세 장벽철폐
	환경제품 및 서비스	캐, 일, 대, 미 홍, 싱, 호, 말, 뉴, PNG	• 환경제품 및 서비스 정의, 관세철폐 • 서비스자유화 • 비관세조치 • 경제기술협력
	화 학	미, 싱, 호, 홍 캐, 일, 말, 뉴, PNG, 태	• 화학분야관세조화협정(CTHA) • 특정분야 관세철폐 가속화 • 비관세장벽 철폐
	임산물	캐, 인, 뉴, 미 홍, 싱, 호, 일, 대, 태	• 관세·비관세 장벽철폐 • 경제기술협력
	보 석	태, 대 호, 캐, 홍, 말, 뉴, PNG, 싱, 한, 미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철폐
	에너지 및 관련장비	호, 태, 미 싱, 홍, 일, 뉴, PNG, 대	• 관세철폐 가속화(oil 제외) • 설비 및 장비관세 철폐 • 비관세장벽 철폐
	의 료 장 비	미, 싱 호, 일, 뉴, PNG, 홍, 태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철폐 • 경제기술협력
	정 보 통 신 MRA	미 캐, 일, 홍, 호, 한, 뉴, PNG, 대	• 정보통신 상호 인정 협정

자료 : 유재원·이홍구,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1998.

〈표 II-6〉

조기자유화 후속검토 분야

분 야		제안국	지 지 국	제 안 내 용
후속 검토 (6개)	식 품	호	홍, 뉴, 브, 캐, PNG, 싱, 태, 미	• 관세철폐, 감축, 조화
	유 지 종 자	캐, 말, 미	호, 브, 인, 뉴, PNG, 싱, 태	• 관세철폐 • 비관세조치, 수출보조금 등 각종 무역 왜곡금지 철폐 • 경제기술협력
	비 료	캐	싱, 태, 일, 뉴, PNG, 대, 미	• 관세철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관세조치 • 경제기술협력
	자동차 표 준	미	싱, 호, 캐, 일, 뉴, PNG, 한	• 표준 및 규제의 조화 •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고 무	태, 일	호, 캐, 인, 뉴, PNG, 싱, 대	• 관세 및 비관세조치 감축 및 철폐 • 경제기술협력
	민 간 항공기	캐	일, 싱, 대, 미, 호, 뉴, PNG	• 관세 및 관세수수료 철폐

자료 : 유재원·이흥구,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1998.

(3) 조기자유화 주요 이슈

조기자유화 주요 이슈로는 관세, 비관세, 보조금, 위생조치, 경제기술협력, 자원관리협력 등 6가지로서 지금까지 APEC에서 논의되어 온 이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Tariffs)

회원국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로서 기본방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320개 수산제품(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해서 무세화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중 관세율 20% 이하 제품은 2003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국의 동의하에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 시기에 융통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48개 유보품목을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주요 반대국인 일본은 관세감축과 자원관리와의 연계 등을 강조하고, 수산분야 관세감축에 있어서 UR양허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품목별 세부유보 명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개도국은 2019년)까지 평균세율 5%로 감축하는 방안(현재 7%)을 마련하여 회의에 임하였으며, 중국은 품목 일부 또는 품목 전체에 대하여 목표시한을 연장하고 목표세율을 5%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비관세(Non-Tariff Measures : NTMs)

기본방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비관세조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당수 비관세조치는 조기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일본은 대만과 같이 비관세조치의 폐지시한을 2009년 12월(개도국은 2019년)까지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관세분야의 6개(HS 6단위) 민감분야 제외가 수용된다면 NTMs 폐지시한(2007년)에 동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일부 품목에 대한 폐지기한 연장을, 필리핀은 폐지일정 및 대상품목을 유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보조금(Subsidies)

보조금에 대한 기본방침은 금지보조금의 조기폐지(WTO 비회원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폐지)로서 1999년 9월까지 보조금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자원관리노력과 관계를 규명토록 하였다. 또한 WTO 협정에 부합토록 보조금을 운영토록 하였다.

④ 위생조치, 경제기술협력, 자원관리협력

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Ecotech), 자원관리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isheries Management)에 대해서는 기타 국제수산기구(UN, FAO, OECD)를 통해서 활발히 논의중으로 APEC에서는 비중있게 취급되지는 않고 있다.

위생조치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까지 참여국의 어류 및 어류제품에 적용

되는 위생조치와 WTO/SPS협정에 부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WTO/SPS협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을 협의하여 2003년 12월까지 철폐토록 하였다.

경제기술협력은 2003년 12월까지 중요한 진전이 되어야 하고, 회원국은 기술 개발을 위해 수산협력사업그룹(Fisheries Working Group : FWG) 및 해양 자원보전협력사업그룹(Marine Resources Conservation Working Group : MRCWG)을 통해 협력하며, 미래의 새로운 경제기술조치에 동의하였다. 특정 국가 및 어족에 취해질 예상조치는 첫째, 무역자유화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조치에의 협조, 둘째, 국내 및 경제왕래 어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강화를 위한 기술협조, 셋째, 자원관리 정책개발 협조 및 지속적 수준내의 어획노력 통제기술 협조, 넷째, 새로운 감독기술 및 정보관리 체제를 통한 수산관리 규정의 이행강화, 경제기술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자원관리협력에 대한 주요내용은 UN공해어업협정 비준을 권장하고, 지역수산 관리기구 설치 또는 기능강화, 1998년부터 진전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고 1999년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1999년 제7차 정상회의까지 관련 연구를 완료토록 하였다.

2. 우리나라의 水産分野 早期自由化 論議過程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는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등의 5개국에서 제안하였으며, 미국, 호주, 홍콩 등 7개국이 지지하였다. 반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으로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칠레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산업의 영세성, 수산자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수산물 조기자유화 반대를 선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우 교역 상대국가가 일본,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본, 중국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6월 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임업과 수산분야를 포함한 9개 전 분야에 대해 적극 참여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조기자유화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조기자유화 유예를 제안하는 방

〈표 II-7〉

조기자유화 주요 이슈 및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관세(Tariffs)	• 2005. 12. 31까지 무세화 • 20% 이하는 조기폐지 • 한정된 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
비관세조치(NTMs)	• 2007. 12. 31까지 비관세조치 폐지 • 상당수 비관세조치는 조기폐지
보조금(Subsidies)	• 금지보조금의 조기폐지 (WTO비회원국은 양허기간내 또는 2003. 12. 31까지 폐지) • 1999. 9. 까지 보조금운영현황 파악 • WTO 협정에 부합토록 보조금 운영
위생조치(SPS)	• 1999. 1. 1까지 수산물에 적용되는 SPS조치 확인 • WTO/SPS협정에 부적합 조치의 2003. 12. 31까지 부합 (WTO비회원국은 양허기간내 또는 2003. 12. 31까지)
경제기술협력 (Ecotech)	• 1998. 11까지 세부이행계획 개발 • 2003. 12. 31까지 중요한 진전 • 1999년부터 연구시작 및 예산요청을 위한 프로젝트 선정
자원관리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isheries Management)	• UN공해어업협정비준 권장 • 지역적 수산물관리기구설치 또는 강화 • 1998년부터 진전사항 보고서 제출 및 1999. 11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FWG가 기존연구사항정리 및 최신화

자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1998.

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수산분야 대상품목의 15% (HS 10단위 기준 48개 품목)가 조기자유화에서 제외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동년 9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양자협약에서 48개 민감품목 리스트를 제시하여 조기자유화 타결시 유보품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조기자유화 반대국 및 지지국과의 수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對EVSL반대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11억 4,238만달러(총수출액의 76.6%), 수입액은 4억 1,431만달러(총수출액의 39.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지국에 대해서는 각각 12.0%, 28.6%를 차지하여 반대국과의 교역액이 지지국과의 교역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한국의 對EVSL지지국과 반대국의 수산물 교역현황(1997년)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APEC국가	446,464	87.7	1,354,934	90.8	448,454	85.8	920,271	88.0
EVSL반대국 ¹⁾	324,362	63.7	1,142,375	76.6	188,143	36.0	414,309	39.6
EVSL지지국 ²⁾	109,027	21.4	179,345	12.0	111,248	21.3	298,640	28.6
APEC 역외국가	62,626	12.3	137,654	9.2	77,927	14.9	125,203	12.0
동양 4개국 ³⁾	336,928	66.2	1,174,925	78.7	268,063	51.3	532,333	50.9
총 수 출 액	509,090	100.0	1,492,588	100.0	522,381	100.0	1,045,474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1998.

주 : 1)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칠레.

2)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

3)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3. 留保品目の 選定

수산분야 조기자유화가 예정대로 1999년부터 시행될 경우 수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성의 원칙에 입각해 유보품목의 범위를 전 수산품목의 20%로 일단 선정하였다.

다음 구체적인 유보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수산품목 320개(HS 10단위 기준)에 대해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을 동일하게 고려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생산량, 생산액, 종사자수, 어업내 비중을, 국제요인으로는 수입액, 관세징수액, 실행세율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320개 품목의 순위를 정하였고, HS 10단위 기준¹⁾으로 대략 20%되는 61개 품목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별로 품목분류의 기준이 달라 HS 6단위, 10단위 두 가지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해 보았으나, HS 10단위 분류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주요 민감품목들이 포함되고 또한 품목을 신축성있게 조정가능하여 10단위로 분류하였다.

○ 국내요인

- 생산량·생산금액 : HS 분류상의 품목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자료 불비로 FAO 분류상의 품목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출방법 : 다랭이(보일드한 것)→다랭이, 기타 냉동새우→새우, 조미오징어→오징어 등)
- 종사자수 : 품목별 관련어종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수
(산출방법 : 해당어종을 생산하는 어업별 종사자수를 구하고, 해당어종이 당해어업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업별 종사자수에 곱함. 즉, (어업별 어종별 생산량/어업별 총생산량)×해당어업 종사자수)

○ 국제요인

- 수입액 : 품목별 수입액
- 관세징수액 : 수입액×실행세율×'97년 평균환율(1달러당 951원)
- 실행세율 : 품목별 조정관세율

○ 평가방법

- 각 요인별 값이 클수록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제함
- 품목별 요인별로 가장 큰 값부터 1~61번까지 순위를 정하여 합계함
- 품목별 요인별 순위 합계가 적을수록 영향이 큰 품목으로 간주함

연구 진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선정된 61개 품목을 다시 15%인 48개 품목²⁾으로 재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재선정을 위해서 생산자잉여 감소액이 큰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정부권장 양식산업, 지역경제 특화산업, 수입의존도 등을 추가하여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자유화 유보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48개 품목의 재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산자잉여 감소액 : 제3장 참조
- 수입의존도 : 수입액/내수액, 이 때 내수액은 (생산액+수입액-수출액)

2) 〈부록 1〉 참조.

- 지역경제 특화산업 : 새우는 전남 일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등어는 대형 선망어업에서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이 어종은 부산지역에서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명태, 가리비는 동해안, 갈치는 서해안, 옥돔은 제주도 등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정부권장 양식산업과 61개 품목 선정시 고려하였던 요인들을 재기준으로 삼음

第3章 水産分野 早期自由化로 인한 影響分析

1. 早期自由化로 인한 社會的剩餘 變化

1) 기본모형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는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적 후생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관세없이 수입되는 외국수산물의 가격이 국내수산물 가격보다 낮다면 수입으로 인한 소비자잉여 증가가 생산자잉여 감소보다 커 사회전체적으로 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PEC국가들 모두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해당국가의 수입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입량을 늘리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이 그만큼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APEC국가 중에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큰 나라는 많지 않으므로 조기자유화(관세철폐)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효과가 그리 클 것 같지는 않으며, 특히 몇몇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그리 높지 않아 관세 철폐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후 조기자유화라는 여건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변의 어장이 좁고 어업자원이 적는데 반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조기자유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에 비해 생산비가 높으며,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값싼 외국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같은 식량산업은 경제외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유통·가공 및 자재산업 등 관련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득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

다. 이 밖에 APEC 조기자유화는 역외 국가들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까지 야기시켜 과연 누구를 위한 조기자유화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 즉 Young과 Huff³⁾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완전무관세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APEC의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역외국에 인화된 관세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배타적 지역주의일 때보다 전체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볼 때 무역자유화를 실행할 경우 지역 전체로는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의 경우 후생의 감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로 인한 소비자잉여 증가와 생산자잉여 감소는 <그림 III-1>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관세의 부과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내생산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여 국내생산시장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t 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가격 차이를 유지하면서 E_0 에서 균형을 이루던 시장이 조기자유화로 인해 관세율 t 를 철폐하여 무관세화할 경우 공급곡선은 S_1S_1 에서 S_2S_2 가 되어 새로운 균형점은 E_1 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가격은 P_0 에서 P_1 으로 하락하게 되며 국내공급량은 $\overline{OQ_0}$ 에서 $\overline{OQ_2}$ 로 감소하고, 수입량은 $\overline{Q_2Q_1}$ 이 되어 국내 총소비량은 관세 부과시에 비해만큼 $\overline{Q_0Q_1}$ 만큼 증가될 것이다.

관세철폐로 인한 잉여변화를 통해 사회적 잉여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잉여 변화로서 관세 철폐 이전의 소비자잉여는 $\triangle DE_0P_0$ 이었으나 관세철폐 이후는 $\triangle DE_1P_1$ 으로 $\square P_1P_0E_0E_1$ 만큼 증가하였다. 다음 생산자잉여 변화로서 관세철폐 이전에 생산자잉여는 $\triangle P_0E_0S_1$ 이었으나 관세철폐 이후는

3) Young, Linda M. and Karen M. Huff, "Free trade in the pacific rim : On what ba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4) 유재원·이홍구의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1998)에 의하면 수산부문의 경우 조기자유화로 30,239천달러의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구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수입개방 대상 수산물 320개 품목이나 어류 및 어류제품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240개 정도로서 여기서는 이들 품목 각각에 대해 $(\overline{P_0 E_0} + \overline{P_1 E_1}) \cdot (P_0 - P_1) / 2$ 를 구하여 소비자잉여 증가액을 추정하였다. 이때 $\overline{P_0 E_0}$ 는 관세부과시의 국내생산량과 같고 $\overline{P_1 E_1}$ 은 여기다가 관세철폐로 인한 수요증가량($\overline{Q_0 Q_1}$ 또는 $\overline{CE_1}$)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런데 품목별 생산량 자료에 있어 공식통계와 HS분류방식간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은 자료 변환과정을 거쳐 공식통계상의 생산량을 HS분류방식과 통일(세분화)시켰다(〈그림 III-2〉 참조).⁶⁾

첫째, 수산물 총생산량은 크게 선어로 유통·소비되든가 가공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을 파악하였다(〈표 III-1〉 참조). 따라서 HS분류상의 어종별 신선냉장 생산량은 어종별 생산량에서 〈표 III-1〉의 선어로 유통되는 비율(13.1%)을 곱하여 구하였다.

둘째, 가공제품에 대한 원료의 국내생산량은 공식통계상의 제품별 총가공생산량(〈표 III-2〉)에다 제품별 수출⁷⁾을 고려하여 생중량으로 환산한 다음 제품별 수입량(생중량 기준)을 차감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관세철폐로 인한 수요증가량(ΔD , 〈그림 III-1〉의 $\overline{Q_0 Q_1}$)을 구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현재의 수요량(D_p), 수요함수의 가격탄성치 및 가격하락률을 알아야 한다. 즉 수요증가량 $\Delta D = D_p \times \text{가격탄성치} \times \text{가격하락률}$ 로써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D_p 로서는 앞에서 구한 품목별 생산량을 대신 사용하였고, 가격탄성치는 품목별로 모두 알아야 하나 자료 제약상 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결과⁸⁾에서 추정한 결과(-0.4679)를 전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가격하락률은 품목별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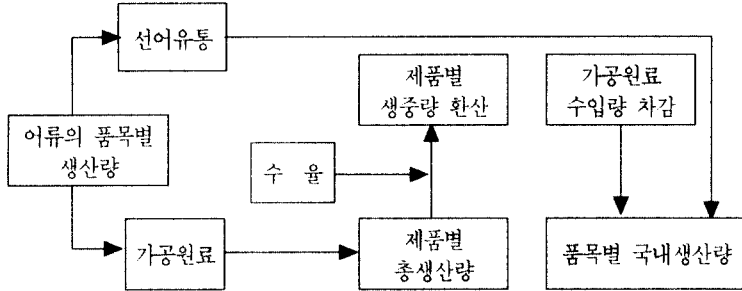
6) 수출입량(금액) 및 관세 등이 HS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어 소비자잉여 증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 분류방식에서는 품목별로 공식통계상의 선어(신선, 냉장) 외에 냉동,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7) 제품별 수출은 〈부록 3〉과 같은데 부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유사한 제품의 수출을 적용하였다.

8) 박성패·신영태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p.58.

〈그림 III-2〉

품목별 국내생산량 추정과정



〈표 III-1〉

수산물 이용현황

단위 : 천M/T, %

구 분	1980	1990	1996
총어획량	1,925	3,275	3,244
선어유통	954	437	422
가공원료	998	2,827	2,822
가 공 료	51.1	86.6	86.9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년도.

〈표 III-2〉

품목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단위 : 천M/T

구 분	1980	1990	1996
소 건 품	17	13	42
염 신 품	7	20	20
통 조 립	11	58	62
냉 동 품	602	1,320	1,265
해조제품	44	88	87
연 제 품	13	97	115
어 유 분	14	95	51
기 타	78	64	44
계	786	1,755	1,727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년도.

소비자잉여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품목별 단위 가격하락액($P_0 - P_1$)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P_0 = P_1(1+t)$ 이고 $P_1 = P_0/1+t$ 이므로 가격하락률은 $(P_0 - P_1)/P_0 = (t/1+t)$ 가 된다. 따라서 품목별 관세폐지 이전의 단가(P_0)에서 가격하락률($t/1+t$)을 곱하여 <그림 III-1>의 $(P_0 - P_1)$ 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품목별로 앞에서 설명한 $(\overline{P_0 E_0} + \overline{P_1 E_1}) \times (P_0 - P_1)/2$ 를 구하여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잉여를 추정하였다.

(2) 분석결과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0개 대상품목 전체를 무관세화하는 경우와 그 중 민감품목인 5개 품목을 유예하는 경우 및 48개 품목(15%)을 유예하는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로 소비자잉여 증가를 추정하였다. 이 때 5개 품목 유예는 우리나라가 1998년 APEC 회의에서 제안한 안이고, 48개 품목유예는 금후 협상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안이다.

우선 대상품목 전체를 무관세할 경우 다음 <표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수산물 총생산금액 4조 4,210억원의 16%인 6,880억원의 소비자잉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고, 민감품목인 5개 품목을 조기자유화에서 유예할 경우의 소비자잉여 증가는 4,693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대상품목의 15%인 48개 품목을 유예할 경우의 소비자잉여 증가는 2,66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III-3> 무관세화에 의한 소비자잉여 증가

구 분	수 입 량 (톤)	수 입 액 (천달러)	소비자잉여 증가 (억원)
전체(320개 품목)를 무관세화	522,381 (100%)	1,045,474 (100%)	6,880 (100%)
5개 품목 유예	83,260 (16%)	110,420 (11%)	4,693 (68%)
48개 품목(15%) 유예	271,185 (52%)	607,853 (58%)	2,669 (39%)

3) 수출증대

(1) 분석방법

APEC 수산물 조기자유화는 소비자잉여 증가 외에 대 APEC국가 수출증가를 가져오고, 수출증가는 궁극적으로 생산자잉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APEC 역내 무관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출대상국의 관세도 동반 철폐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출도 증대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출은 수입국의 수입수요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수요(D_i)는 수입가격(P_i), 국내가격(P_D), 소득(Y)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입국의 국내가격과 소득이 일정하다면 수입가격(P_i)에 의해 수입량의 크기는 증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림 III-1>에서 본 바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관세 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APEC 역내국가의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증대효과는 APEC 각국의 어종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야 되나 여기서는 자료 등의 제약으로 현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는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통계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역내 관세 철폐에 따라 APEC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증대액을 추정하고 나서 수산업 평균수익률(9.48%)을 곱하여 이를 생산자잉여 증가분으로 간주하였다. 즉, Q 를 우리나라의 APEC국가에 대한 수출액으로 보고 P 를 수출단가라 하면 $Q = \alpha + \beta P$ 에서 각국별로 β 를 구한 후 현재가격(P_1)과 관세철폐후의 가격(P_2)을 적용한 $Q_1 - Q_2$ 가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대액이 된다. 이 때 P_2 의 가격은 소비자잉여 증가시와 마찬가지로 $P_1 = P_2(1+t)$ 에서 $P_2 = P_1/1+t$ 로 구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4〉 우리나라의 APEC역내 수산물 수출량 및 금액

연 도	수출량(M/T)	수출금액(천달러)	수출단가(달러)	환율(원/1달러당)
1987	482,447.3	1,442,166	2,989	822.41
1988	481,765.6	1,700,836	3,530	730.53
1989	402,187.7	1,504,434	3,741	671.38
1990	386,335.2	1,346,654	3,486	707.97
1991	418,194.1	1,461,887	3,496	733.6
1992	371,142.3	1,351,084	3,640	780.84
1993	315,149.4	1,332,270	4,227	802.73
1994	327,629.1	1,465,727	4,474	803.62
1995	371,617.5	1,532,356	4,123	771.04
1996	383,877.9	1,455,251	3,791	804.78
1997	432,726.5	1,328,403	3,070	951.11

(2) 분석결과

상기 분석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무관세화에 의한 전체 APEC 대상국가에 대한 수산물 수출증대액은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 철폐 후 약 448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평균환율 951원 적용). 이 중 생산자잉여 증가액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수산업 평균수익률인 9.48%를 적용할 경우 약 4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5〉 무관세화에 의한 對APEC국가 수산물 수출증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무관세 이전 수출액(Q ₁)	무관세 이후 수출액(Q ₂)	증 감
APEC 전체	263,602	308,420	44,818

4) 생산자잉여 감소

(1) 분석방법

생산자잉여 감소도 자료확보가 가능한 240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개별품목에 대한 수요 및 공급탄성치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하락이 어느 정도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한정하였고 기타 제약요인은 소비자잉여 증가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그림 III-1>의 $\triangle P_0E_0E_4P_1$ 으로서 이것은 $[(P_0 - P_1) \times \overline{OQ_2}] + (P_0 - P_1) \times \overline{Q_2Q_0}/2$ 로써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약으로 인해 실제 계산상 $(P_0 - P_1) \times \overline{OQ_0}$ 로써 구하였는데 이는 $\triangle E_0E_4C$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이 때 $(P_0 - P_1)$ 은 소비자잉여 증가 추정시와 마찬가지로 $P_0(t/1+t)$ 이며 $\overline{OQ_0}$ 는 현재의 공급량이다.

(2) 분석결과

여기서도 소비자잉여 증가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상품목 전체를 무관세화하는 경우와 그 중 민감품목인 5개 품목을 유예하는 경우 및 48개 품목(15%)을 유예하는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로 생산자잉여 감소를 추정하였다.

우선 대상품목 전체를 무관세할 경우 다음 <표 III-6>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수산물 총생산금액 4조 4,210억원의 15%인 6,576억원의 생산자잉여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고, 민감품목인 5개 품목의 조기자유화 유예가 가능할 경우 생산자잉여 감소는 4,50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전품목 무세화시의 70%) 대상품목의 15%인 48개 품목의 조기자유화 유예가 가능할 경우 생산자잉여 감소는 2,579억원(전품목 무세화시의 39%)으로 추정되었다.

5) 사회적잉여 변화

지금까지 분석한 APEC 조기자유화의 사회적 잉여변화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6〉

무관세화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

구 분	수 입 량 (톤)	수 입 액 (천달러)	생산자잉여 감소 (억원)
전체(320개 품목)를 무관세화	522,381 (100%)	1,045,474 (100%)	6,576 (100%)
5개 품목 유예	83,260 (16%)	110,420 (11%)	4,509 (70%)
48개 품목(15%) 유예	271,185 (52%)	607,853 (58%)	2,579 (39%)

즉, 전품목 무세화시 소비자잉여는 6,880억원이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6,576억원(수출증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는 42억원)이 감소함으로써 346억원의 사회적 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품목인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갈치, 냉동민어, 냉동조기의 5개 품목을 조기자유화에서 유예할 경우 소비자잉여 증가는 4,693억원인 반면 생산자잉여 감소는 4,509억원으로 나타나 184억원의 사회적 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품목의 15%인 48개 품목을 조기자유화에서 유예할 경우 소비자잉여 증가는 2,669억원인 반면 생산자잉여 감소는 2,579억원으로 90억원의 사회적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조기자유화로 인한 사회적잉여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순효과
	소비자잉여 증가	수출증대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	생산자잉여 감소	
전품목 무세화시	6,880	42	6,576	346
5개 민감품목 유예시	4,693	-	4,509	184
48개 품목 유예시	2,669	-	2,579	90

2. 早期自由化로 인한 漁業別 影響

앞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입개방 대상품목 320개에 대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해 보았다. 각 품목의 무관세화로 수입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의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생산자잉여는 총량분석으로서 조기자유화로 인해 어떤 어업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요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분석하였다.

1) 분석방법

(1) 대상어업 선정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어업을 선정하였다. 연근해, 내수면, 양식, 원양어업 등 모든 어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자료확보가 용이한 연근해어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연근해어업은 어법에 따라 크게 저인망, 선망, 부망, 유자망, 기선선인망 등 12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부어업별로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근해어업 중 어업생산량과 생산액의 비중이 큰 총 7개의 어업을 선정하였다.

즉 저인망어업 중에는 대형트롤과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을, 선망어업 중에는 대형선망어업을, 부망어업 중에는 근해안강망어업을, 낚시어업 중에는 근해채낚기어업을, 통발어업 중에는 근해통발어업, 그리고 기선선인망어업으로서 기선권현망어업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7개 어업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5.6%,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석대상어업 각각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과 연근해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즉 분석대상어업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1997년에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5.7%,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3.5%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 대형트롤어업이 각각

4.5%와 10.7%, 기선권현망어업이 각각 3.9%와 9.3%, 근해안강망어업이 각각 3.8%와 9.0%를 점하고 있다.

〈표 III-8〉 분석대상어업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1997년)

구 분		생 산 량(M/T)
총생산량(A)		3,243.725
연근해어업 생산량(B)		1,367.406
분석대상어업	소 계(C)	830.172
	대 형 트 롤	145.727
	대 형 기 저(쌍)	100.461
	대 형 선 망	184.789
	근 해 안 강 망	122.431
	기 선 권 현 망	127.595
	근 해 채 낚 기	97.458
	근 해 통 발	51.711
C/A(%)		25.6
C/B(%)		60.7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8.

〈표 III-9〉 분석대상어업별 생산량 비율(1997년)

단위 : %

어 업	총생산에 대한 비율	연근해어업에 대한 비율
대 형 트 롤	4.5	10.7
대 형 기 저(쌍)	3.1	7.3
대 형 선 망	5.7	13.5
근 해 안 강 망	3.8	9.0
기 선 권 현 망	3.9	9.3
근 해 채 낚 기	3.0	7.1
근 해 통 발	1.6	3.8

(2) 대상어업의 어종선정

어업별 생산자잉여를 추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각 어업이 어떤 어종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별로 생산량과 생산액⁹⁾이 큰 어종을 우선적으로 4~9개 정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어종 중에는 HS코드상의 분류품목에 맞추어 몇 개를 합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조기는 참조기와 기타조기를, 계류는 꽃게, 붉은대게, 기타게 등을 합한 것 등이다.

① 대형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종은 오징어로서 대형트롤어업 생산량의 59.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갈치, 쥐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징어, 갈치, 쥐치, 병어, 조기, 홍어, 멸치, 삼치, 고등어, 전갱이 등 모두 10개의 어종을 선정하였다.

〈표 III-10〉

대형트롤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kg당 단가(원)
오징어	87,295	59.9	95,064,255	47.6	1,089
갈 치	13,493	9.3	34,852,419	17.5	2,583
쥐 치	13,205	9.1	14,802,805	7.4	1,121
병 어	3,516	2.4	9,443,976	4.7	2,686
조 기	1,905	1.3	12,176,760	6.1	6,392
홍 어	1,255	0.9	4,775,275	2.4	3,805
멸 치	5,645	3.9	5,340,170	2.7	946
삼 치	1,073	0.7	2,592,368	1.3	2,416
고등어	3,478	2.4	2,549,374	1.3	733
전갱이	1,235	0.8	839,800	0.4	680
기 타	13,627	9.4	17,197,274	7.6	1,262
계	145,727	100.0	199,634,476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1998.

수협중앙회, 「수협통계조사월보」, 1998. 3.

9) 어업별 어종별 생산액은 공식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어업별 어종별 생산량에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수협통계 조사월보”의 어종별 단가를 곱하여 구함.

②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에서 선정된 어종은 11개로 조기, 갈치, 병어, 삼치, 민어, 오징어, 붕장어, 아귀, 고등어, 홍어, 전갱이이다. 어종 중에서는 조기와 갈치, 병어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표 III-11〉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kg당 단가(원)
조 기	13,069	13.0		83,537,048	35.2		6,392
갈 치	19,988	19.9		51,629,004	21.8		2,583
병 어	3,133	3.1		8,415,238	3.5		2,686
삼 치	7,240	7.2		17,491,840	7.3		733
민 어	256	0.3		2,302,720	0.9		8,995
오징어	3,018	3.0		3,286,602	1.3		1,089
붕장어	1,296	1.3		4,464,720	1.8		3,445
아 귀	919	0.9		3,142,980	1.3		3,420
고등어	7,607	7.6		5,575,931	2.3		733
홍 어	747	0.7		2,842,335	1.2		3,805
전갱이	840	0.8		571,200	1.3		680
기 타 ¹⁾	42,348	46.1		53,443,176	22.5		1,262
계	100,461	100.0		236,702,794	100.0		

자료 : 〈표 III-10〉과 동일.

주 : 1) 기타 어종 중 강달이는 국내생산량은 많지만(총생산량의 5% 차지) HS 품목분류상 기타 어류로 속해 수입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도 기타로 분류하여 계산함.

③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의 75% 가량을 고등어가 차지하고 있다. 선정된 어종은 고등어를 포함한 전갱이, 갈치, 쥐치, 정어리, 오징어, 삼치, 방어, 홍어 등 9개 어종이다.

〈표 Ⅲ-12〉

대형선망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kg당 단가(원)
고등어	139,293	75.3	102,101,769	66.4	733
전갱이	12,867	6.9	8,749,560	5.6	680
갈 치	2,907	1.5	7,508,781	4.8	2,583
정어리	6,844	3.7	3,736,824	2.4	546
오징어	3,087	1.6	3,361,743	2.1	1,089
삼 치	1,149	0.6	2,775,984	1.8	2,416
방 어	4,336	2.3	6,360,912	4.1	1,467
홍 어	467	0.2	1,776,935	1.1	3,805
쥐 치	652	0.2	730,892	0.4	1,121
기 타	13,187	0.3	16,641,994	10.8	1,262
계	184,789	100.0	153,745,394	100.0	

자료 : 〈표 Ⅲ-10〉과 동일.

④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도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과 같이 강달이의 생산량이 많았으나 강달이가 기타 어종에 포함됨에 따라 조기, 갈치, 젓새우, 병어, 아귀, 복어 등 6개 어종을 선정하였다.

〈표 Ⅲ-13〉

근해안강망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kg당 단가(원)
조 기	14,404	11.8		92,070.368	33.1	6,392
갈 치	19,495	15.9		50,355.585	18.1	2,583
젓새우	6,960	5.7		23,016.720	8.2	3,307
병 어	3,151	2.6		8,463.586	3.0	2,686
아 귀	1,865	1.5		6,378.300	2.2	3,420
복 어	560	0.5		2,014.880	0.7	3,598
퀴 치	528	0.4		591.888	0.2	1,121
기 타	75,468	62.1		95,240.616	34.2	1,262
계	122,431	100.0		278,131.943	100.0	

자료 : 〈표 Ⅲ-10〉과 동일.

⑤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99% 가량을 멸치를 생산하며, 전어와 전갱이를 소량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멸치만을 대상어종으로 선정하였다.

〈표 Ⅲ-14〉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생산액		kg당 단가(원)
				구성비	
멸 치	125.781	98.6	118,988.826	98.1	946
기 타	1,814	1.4	2,289.268	1.9	1,262
계	127.595	100.0	121,278.094	100	

자료 : 〈표 Ⅲ-10〉과 동일.

⑥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오징어가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징어를 포함한 갈치, 복어, 문어, 방어, 꽁치 등 6개 어종을 선정하였다.

〈표 III-15〉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구성비		kg당 단가(원)	
		생산액	구성비		
오징어	87,553	89.8	95,345,217	74.3	1,089
갈 치	1,956	2.0	5,052,348	3.9	2,583
복 어	4,597	4.7	16,540,006	12.9	3,598
문 어	1,796	1.8	8,963,836	7.0	4,991
방 어	146	0.1	214,182	0.2	1,467
꽁 치	729	0.7	1,324,593	1.0	1,817
기 타	681	0.7	859,422	0.7	1,262
계	97,458	100.0	128,299,604	100.0	

자료 : 〈표 III-10〉과 동일.

⑦ 근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에서는 〈표 III-16〉과 같이 게류, 붕장어, 골뱅이, 문어 등 4개 어종을 선정하였으며, 게류 생산량에는 꽃게, 붉은대게, 기타게류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16〉

근해통발어업의 어종선정

단위 : M/T, 천원, %

어 종	생산량	생산액		kg당 단가(원)
		구성비	구성비	
계 류	47,571	92.0	163,882,095	3,445
붕장어	3,124	6.0	17,741,196	5,679
골뱅이	305	0.6	809,470	2,654
문 어	83	0.2	414,253	4,991
기 타	628	1.2	792,536	1,262
계	51,711	100.0	183,639,550	

자료 : 〈표 III-10〉과 동일.

(3) 대상어종의 생산비중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대상어종이 어업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징어의 총생산량은 224,959M/T이고, 이 중 대형트롤어업에서 38.8%인 87,298M/T을, 대형기선 저인망 쌍끌이어업에서 1.4%인 3,018M/T을, 근해채낚기어업에서 38.9%인 87,553M/T을 생산하고 있어 각 어업별로 동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어업별 어종별 비중을 HS코드상의 품목별 생산자잉여 감소액¹⁰⁾에 곱하여 어업별 어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구하였다. 이 때 기타 어종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각 업종이 전체수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times$ 기타 어종의 업종내 생산량 비중 $\times$ 기타 어종의 생산자잉여 합계¹¹⁾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10) 예를 들어 HS코드상 오징어의 품목은 건조, 냉동, 밀폐용기, 신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각 오징어 품목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에 어종별 비중을 곱하여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구하였다(대형트롤 오징어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오징어(건조)의 생산자잉여 감소 6,218백만원 $\times$ 38.8%, 오징어(냉동)은 98,240 $\times$ 38.8% 등을 구하여 합한 것임).

11) 선정 어종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자잉여 감소액.

〈표 III-17〉

대상어종의 어업별 생산량 비율

단위 : %

어종 \ 어업	합 계	대 형 트 롤	대형기 저(쌍)	대형 선망	근 해 안강망	기 선 권현망	근 해 채낚기	근 해 통 발	기 타 어 업
오징어	100.0	38.8	1.4	1.4	(0.4)	-	38.9	-	19.5
갈 치	100.0	20.1	29.8	4.3	29.0	-	2.9	-	13.9
퀴 치	100.0	80.9	-	4.0	3.2	-	-	-	11.9
병 어	100.0	32.6	29.1	(1.1)	29.3	-	-	-	9.0
조 기	100.0	5.5	37.4	-	41.2	-	-	-	15.9
홍 어	100.0	38.9	23.2	14.5	(1.6)	-	-	-	23.4
멸 치	100.0	2.4	(0.7)	-	(0.2)	54.5	-	-	43.1
삼 치	100.0	9.6	64.8	10.3	(0.7)	-	(0.3)	-	15.3
고등어	100.0	2.2	4.7	86.8	(0.6)	-	-	-	6.3
민 어	100.0	(0.3)	21.8	-	(1.6)	-	-	-	78.2
붕장어	100.0	(0.4)	6.8	-	(0.8)	-	(0.1)	16.3	76.9
아 귀	100.0	(1.4)	18.2	-	37.0	-	-	-	44.8
젓새우	100.0	-	-	-	44.5	-	-	-	55.5
게 류	100.0	-	-	-	(1.2)	-	-	68.6	31.4
골뱅이	100.0	-	-	-	-	-	-	18.9	81.1
문 어	100.0	(0.6)	(0.9)	-	(0.6)	-	21.8	1.0	77.2
전갱이	100.0	5.4	3.7	56.5	-	(0.1)	(0.4)	-	34.4
정어리	100.0	(0.4)	-	75.7	-	(0.1)	-	-	24.3
방 어	100.0	(0.8)	(1.4)	71.5	-	-	2.4	-	26.1
복 어	100.0	(0.9)	(1.8)	-	7.5	-	61.5	(0.5)	31.0
꽁 치	100.0	-	-	-	-	-	3.9	(0.1)	96.1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1998에서 재작성.

주 : () 는 선정되지 않은 어종이나 해당어업에서 생산되는 비율임.

2) 분석결과

(1)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 추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해 본 결과 전품목 무관세화시 생산자잉여 감소 6,576억원 중 7개 근해어업의 생산자잉여 감소는 32%인 2,1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7개 근해어업의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표 Ⅲ-18>과 같다. 대상어업 중 가장 많은 생산자잉여 감소를 나타낸 어업은 대형트롤어업으로 571억원이고, 다음은 근해채낚기어업 496억원, 근해안강망어업 335억원,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330억원, 대형선망어업 158억원, 기선권현망어업 140억원, 근해통발어업 8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가 1998년 APEC회의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감품목 5개(오징어·명태·갈치·민어·조기냉동)에 대해서 관세폐지를 유보받을 경우 7개 근해어업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129억원(전품목 무세화시의 17%)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전품목 무관세화할 때와는 달리 근해안강망어업이 257억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자잉여 감소를 보이고 있다. 다음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230억원, 대형트롤어업 164억원, 대형선망어업 144억원, 기선권현망어업 140억원, 근해채낚기어업 111억원의 순서를 보였으며, 근해통발어업은 83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표 Ⅲ-18>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 추정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소 계	대 형 트 롤	대형기저 (쌍)	대형 선망	근 해 안강망	기 선 권현망	근 해 채낚기	근 해 통 발
전품목 무세화시	6,576 (100.0)	2,113 (32.1)	571 (8.7)	330 (5.0)	158 (2.4)	335 (5.1)	140 (2.1)	496 (7.5)	83 (1.3)
5개품목 유예시	4,509 (100.0)	1,129 (25.0)	164 (3.6)	230 (5.1)	144 (3.2)	257 (5.7)	140 (3.1)	111 (2.5)	83 (1.8)

(2) 조기자유화로 인한 어업별 영향지수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절대액)은 생산량(액)이 많을수록 커지므로 각 업종이 조기자유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어업별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잉여 감소액 비율(조기자유화 영향지수라고 칭함)을 산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조기자유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업은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생산액 대비 생산자잉여 감소액 비율이 38.6%를 차지하여 무관세화시 대상어업 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형트롤어업 28.6%,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14.0%, 근해안강망어업 12.0%, 기선권현망 11.6%, 대형선망이 10.3%, 근해통발 4.5%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5개 민감품목을 유예할 경우에도 근해채낚기어업이 30.0%를 차지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다음으로는 대형트롤 20.4%, 기선권현망 11.6%, 근해통발 4.5%, 대형기저(쌍) 4.2%, 근해안강망 2.8%, 대형선망 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동 지수가 클수록 영향정도가 크고, 동 지수가 작을수록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9>

어업별 조기자유화 영향지수

단위 : %

구 분	대 형 트 롤	대형기 저(쌍)	대형 선망	근 해 안강망	기 선 권현망	근 해 채낚기	근 해 통 발
전품목 무세화시	28.6	14.0	10.3	12.0	11.6	38.6	4.5
5개품목 유예시	20.4	4.2	0.9	2.8	11.6	30.0	4.5

第4章 早期自由化에 대한 對應方案

제3장의 분석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APEC 조기자유화로 인해 사회적잉여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잉여증가는 수산분야의 잉여감소를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금후 이에 상응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조기자유화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은 외국수산물 수입의 급증과 이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감소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어업경영체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수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수산업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조기자유화로 인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즉 지나친 수산업 위축은 수산물 공급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의 실업문제 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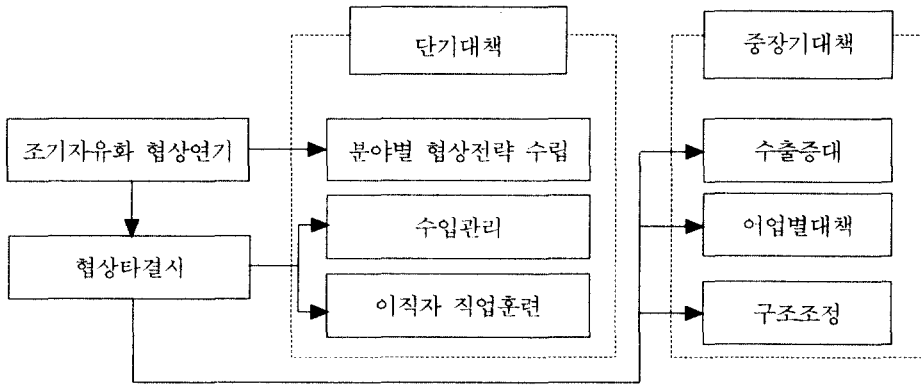
따라서 현상황에서 우리가 주력해 나가야 할 부문은 조기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협상 자체가 아직 타결되지 않음을 감안, 금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과 협상타결 후 외국수산물의 수입의 증가에 대비한 수입관리방안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관세폐지라는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대APEC국가들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자잉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어업별로는 어업특성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조기자유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선세력을 조기에 감축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탈락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하게 타산업이나 타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1〉

조기자유화에 대응한 정책의 기본방향



1. 금후 協商에 대비한 分野別 戰略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 논의가 당초 1998년말에 타결, 19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관세문제는 WTO로 협상창구가 바뀌게 되었고 기타 문제는 계속 APEC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관세분야 조기자유화를 WTO에서 논의함으로써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배제된 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조기자유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관세를 비롯하여 APEC에서 제기되었던 6개 이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998년말에 APEC에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이미 최종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오징

어, 명태, 갈치, 민어, 조기냉동품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하지 않고 대신 272개 품목에 대해서는 1999~2005년간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6~2009년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에서 새로 논의될 관세철폐 문제에 있어 기제출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 되는데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제출한 것은 48개 민감품목(〈부록 1〉 참조)의 조기자유화 유예로서 일차적으로 이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안은 우리나라가 APEC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최종안으로서 이 안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 안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수산부문에 생산자잉여 감소가 2,579억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수산업의 상당 부분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더 이상의 관세철폐는 사회적 잉여의 순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 금년도에 제안한 내용(5개 품목 제외, 272개 품목 우선 관세철폐, 43개 품목 2006년 이후 관세철폐)은 관철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를 비롯한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APEC 이외의 국제 기구를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으나 일본에서는 수입쿼터제도(IQ)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공조나 견제가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일본은 김, 참치 등 9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도를 실시, 실질적으로 수입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비관세조치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동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APEC 협상에서 관세 분야 등에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굳이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對일본 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보조금

보조금 문제가 APEC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OECD나 WTO 등 기타 국제기구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APEC에서 주요 이슈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데 수산분야에 대한 보조금의 계속적인 지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우 보조금분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별로 없다. 즉 수산분야에서 금지보조금¹²⁾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고, 상계가능보조금¹³⁾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허용보조금¹⁴⁾에 대한 지원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허용보조금 지원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노령어가의 조기은퇴에 대한 직접지불제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어가 은퇴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은퇴를 유도함으로써 전업어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젊은 어업인 후계자의 어업 신규진입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어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로부터 어업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사회보험 및 공제 등 도입) 특정 수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어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에 대한 직접지불제로서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에 대하여 실제 양식면적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어업경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2)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역 왜곡효과가 큰 보조금으로서 수출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이 대표적이다.

13) 보조금지급으로 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타국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보조금으로 상대방에서 국내사업 피해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부과 등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14)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수혜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보조금, 낙후지역 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넷째, 환경친화적 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서 수산자원보전지역, 보호수면 등 특정지역 지정으로 일정한 규제가 부과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어업활동이 제한을 받는 경우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위생조치

위생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WTO회원국으로서 WTO 위생조치(S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WTO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도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요한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검사·검역제도의 개선)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5) 경제기술협력

APEC 경제기술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국력에 비해 경제기술협력분야에 취약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기자유화, 해양환경보전(환경친화적 수산업), 연안역의 효율적 관리 등 앞으로 각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조사와 국가간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되 지금까지의 성과 및 금후의 계획을 보면 <표 IV-1>과 같다.

6) 자원관리협력

이 분야 또한 OECD, FAO, UN 등 APEC 이외의 국제기구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고 기타 국제수산기구에서도 추진중에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11월 UN 해양법협약 발효로 해양이용질서가 전면 개편되었고 1995년 8월 UN 공해(公海)협약의 채택으로 공해어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1993년 11월에는 FAO 편의국적선 금지협정이, 1995년 10월에는 FAO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규범이 채택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2개 국제수산기구

〈표 IV-1〉

APEC 경제기술협력 현황

제 목	내 용	소요예산
수산물 조기자유화	· 수산분야 조기자유화 영향평가, 민간분야 자유화장 · 애요인 처방책 제시 · 수산보조금의 효과성 검토 · APEC회원국 Seminar 개최	\$120,000 (기유치)
양식어장 환경안전성 평가	· 수산생물체 내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오염지표조사 ·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안전성 평가 · APEC 역내 연안양식장 환경개선책 도출	\$70,000 (기유치)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 APEC 회원국 연안통합관리평가 · 연안통합관리 정보수집, 정책개발 · 연안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방안 강구	\$200,000 (계획)
연안통합관리 워크샵	·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검토 · APEC회원국 Workshop 개최	\$100,000 (계획)
해양환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 해양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 · APEC 회원국 해양환경전문가 교육 · 해양환경교육훈련 센터 운영방안 강구	\$200,000 (계획)
해양환경교육훈련 워크샵	· 해양환경교육훈련 프로그램 검토 · APEC회원국 Workshop 개최	\$100,000 (계획)
해양환경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경제효과	· 해양환경변화의 요인 · 기후변화에 미치는 해양환경의 영향 · 기상이변의 경제적 손실 추계 · APEC회원국 Seminar 개최	\$100,000 (계획)
통합 물류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	· 물류장애요인 분석 · 물류비용의 최소화 방안 · 항구적 물류정보체계 구축 · APEC 회원국 Seminar 개최	\$100,000 (계획)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기구과, 1998.

중 현재 14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데(〈표 IV-2〉 참조) 지금까지는 그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후 기가입 기구에서의 활동강화 및 미가입 기구에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관리협력과 관련하여 앞으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동북아수역에 있어서 한·중·일 공동 어업자원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3국간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단기적

으로는 3국의 어업자원공동조사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어업관리 및 공동이용 수역에 있어서의 어획쿼터 배정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1단계로 기존의 한·일 자원전문가회의에 중국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i) 어업자원 평가를 위한 어획정보 등 자료교환 및 분석, ii) 어업자원의 공동관리 방안, iii) 종합적인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 권고를 담당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어업협정에서 구성키로 한 한·중·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원관리 및 국별 TAC 권고량을 결정하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전문가회의에서 자원평가, 적정 어획량 및 TAC를 산출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동북아 어업자원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국별 TAC를 배정하고 공동관리방안의 시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APEC 자원관리협력분야에서 일본이 자원관리와 무역제한 연계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참치의 경우 자원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참치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참치의 국제무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2. 輸入管理方案

APEC 조기자유화 논의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비관세장벽 철폐문제까지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우리 임의대로 어떤 방안을 시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입관리를 위한 방안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 상황하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는 긴급수입제한제도(Safe Guard)와 수입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정도이다.

1) 긴급수입제한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수입국 내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가트(GATT)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조치이다. 동 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과는 달리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

〈표 IV-2〉

국제수산기구 가입현황

기 구 명	설 치	가 입	주 요 기 능
FAO 수산위원회 (COFI)	1965. 5	1965. 12	· 수산사업 및 집행계획 · 국제수산문제 검토 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1966. 5	1970. 8	· 참치자원의 생산성 유지 · 국제감시제 실시
인도양수산위원회 (IOFC)	1967. 6	1967. 12	·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국가사업 추진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APFIC)	1948. 11	1950. 1	· 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촉진
APEC 수산위원회	1989. 11	1991. 3	· 역내 수산자원 관리 · 기술이전 등
OECD 수산위원회	1961. 9	1996. 10	· 회원국간 수산정보 교환 · 정책협의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1967. 9	1968. 1	· 자원조사 및 훈련 · 자원규제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1973. 11	1974. 1	· 자원조사 통계모집 · 연구사업 조정
국제포경위원회 (IWC)	1946. 12	1978. 12	· 고래자원 보존 · 포경규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1982. 4	1985. 11	· 연구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 · 자원보존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1979. 1	1993. 12	· 자원보존 및 관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1992. 3	1995. 7	· 자원조사, 과학정보교환 등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1996. 3	1996. 7	· 인도양의 참치 자원발굴, 관리
중부베링명태협약	1995. 12	1995. 12	·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기구과, 1998.

관행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이므로 그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조기자유화 협상에서 품목제의 불가시 필요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6~31조, 동법시행령 제61~82조, 무역위원회고시 제9021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도의 발동요건은 대외무역법 제26조 제1항에서 i) 수입수량의 증가, ii)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iii)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검사·검역제도의 개선

다음 검사·검역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UR 위생검사(SPS)규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국내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전지역, 전품목에 대해 규제사항을 정한 후 위험평가에 따라 금지품목과 지역을 해제하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검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내생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방안으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및 EU의 공장등록제도 등이 있다.

물론 국내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자로 하여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나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고, 특히 비위생적인 외국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유효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검사와 검역을 담당할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표시제 강화

수입관리의 한 방안으로 1994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원산지 표시패말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고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모두 원산지표시 및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도 부족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되 단속범위도 소매업자 위주에서 수입업

자 및 유통업자까지 포함하고,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며, 수입산과 국내산의 식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자료 배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輸出擴大方案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앞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경우 우리가 입게 되는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이 사실이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출확대방안으로 최근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 ① 소규모 어업인이 생산물을 수협에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선 도수협을 육성하고,
- ② 박람회 참가, 특별 판촉행사, 교역정보 수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며,
- ③ 해조류, 활선어패류, 냉동품, 가공품 등 전문분야별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주력업체를 육성하고,
- ④ 기타 생산어가 → (냉동공장) → 수출업체간 계열화를 촉진하여 국제화식품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를 지원한다.

따라서 APEC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수출확대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 외에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어업자들이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즉 i) 재정경제부에서는 외화자금 53억달러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보증지원 등을 하고 있고, ii)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수출환어음 지원, 외국환은행 외환수수료율 자율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iii) 관세청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물류비용 절감(부두직통관제, 포괄즉시수리제 등),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 iv) 국제청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漁業別 對應方案

1) 어업별 생산요소가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앞에서 주요 어업별로 APEC 조기자유화로 인해 야기될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추정하였는데 조기자유화에 대한 어업별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어업별로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는(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업별로 생산요소가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요인이 생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APEC 조기자유화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어느 부문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조사한 1985~1997년간의 어업경영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어업별 생산액을 종속변수로, 출어비, 인건비 및 관리비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때 출어비에는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소모품비 및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선원임금이며 관리비에는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V-3> 생산요소가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어업	탄 성 치			R ²
	출어비	인건비	관리비	
대형트롤	0.6937 (2.496)	0.3940 (4.246)	0.0152 (0.089)	0.9887
대형기저쌍굴이	0.3568 (2.646)	0.3571 (4.153)	0.0840 (0.591)	0.9918
대형선망	0.4933 (3.491)	0.3742 (2.666)	0.2192 (1.554)	0.9893
근해안강망	0.0027 (0.016)	0.4195 (2.502)	0.2999 (2.306)	0.9791
기선권현망	0.0452 (0.781)	1.0854 (20.68)	0.0363 (0.463)	0.9811
근해채낚기	0.1288 (0.799)	1.3210 (3.535)	-0.2808 (-1.052)	0.9672
근해통발	0.8266 (5.940)	0.1941 (1.543)	0.0613 (0.504)	0.9911

주 : () 내는 t치임.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R^2)이 전체 어업에 있어 0.96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고 출어비와 인건비에 있어서는 통계수치의 유의성(t치)도 대체로 양호했으나 관리비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대체로 낮았다.

어업별 출어비와 인건비 탄성치 추정결과를 보면, 대형트롤어업과 근해통발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가, 대형기저 쌍끌이어업과 대형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와 인건비가, 근해안강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어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수록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업별로 출어비 및 인건비의 구성비를 보면 대형트롤, 대형기저 쌍끌이, 근해통발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의 비중이 크고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및 근해채낚기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가 다소 많거나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V-4〉 어업별 출어비와 인건비 구성비(1997년)

단위 : 천원

어업	계	출어비	인건비
대형트롤	895,619 (100.0)	646,818 (72.2)	248,801 (27.8)
대형기저쌍끌이	955,123 (100.0)	691,322 (72.4)	263,801 (27.6)
대형선망	3,178,636 (100.0)	1,829,639 (57.6)	1,348,997 (42.4)
근해안강망	299,933 (100.0)	178,429 (59.5)	121,504 (40.5)
기선권현망	1,049,452 (100.0)	557,859 (53.2)	491,593 (46.8)
근해채낚기	256,387 (100.0)	126,652 (49.4)	129,735 (50.6)
근해통발	411,616 (100.0)	271,755 (66.0)	139,861 (34.0)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8.

주 : ()내는 구성비.

2) 어업별 대응방안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할 때 어업별 생산성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형트롤어업과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은 생산요소별 탄성치와 구성비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생산요소 투입비율을 유지하되 생산요소별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출어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절감을 위한 어선현대화와 동력개량,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업기계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대형선망어업 경우 현재 6~7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단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어선현대화 등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선기관 대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표 IV-5〉 참조), 어업기계화를 위해서는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표 IV-6〉 참조).

둘째, 대형기저 쌍끌이,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및 근해채낚기어업은 노동투하가 어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장비개량 등을 지양하되 어업인력의 적기,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승선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 어업별로 공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어선세력 감축

조기자유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우선적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할 때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대형기저 쌍끌이어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전업희망자 직업훈련

APEC 조기자유화로 인해 많은 어업경영자와 종사자가 어업을 떠나야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책의 내용으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전업희망자 직업훈련으로서 이는 다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산업이 아닌 타산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업대상자를 시·도에서 접수를 받아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둘째,

수산분야 내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수산진흥원이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산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전업희망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간에 실업상태에 있는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육비 전액에 대한 보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V-5〉 어선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실적

사 업	지원연도	지 원 조 건	지 원 실 적	
			물 량	금 액 (백만원)
노후어선대체	1978~1997	○연안어선 및 경제성 어선 : 보조 20%, 융자60%, 자담20% ○근해어선 : 융자80%, 자담20%	3,010척 (44,819톤)	185,168
경제성어선 건조	1987~1995	○1995년까지 추진되었고, 1996년부터 노후어선대체에 포함	1,347척 (21,748톤)	139,372
계획조선	1977~1991	○1991년까지 추진	853척 (104,184톤)	283,494
어선기관대체	1977~1997	○융자80%, 자담20%	6,213대 (590,890마력)	71,354

〈표 IV-6〉 어로장비 개량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실적

사 업	지원연도	지 원 조 건	지 원 실 적	
			물 량	금 액 (백만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1977~1997	○융자80%, 자담20%	732척 (25,061톤)	64,560
기자재 생산 지원	1989~1997	○융자80%, 자담20%	52개사	12,687
어선용기계 구입자금지원	1994~1997	○보조50%(국고30%, 지방비20%), 융자 30%, 자담 20%	9,772대	24,187

第5章 要約 및 結論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초기에는 매년 현안을 상호협의하는 수준의 비공식적 협의체였으나 1993년 제5차 각료회의 및 제1차 정상회의부터 지역통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출범당시 가입국은 12개국이었으나 이후 18개국으로 늘었다가 1998년부터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은 전세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60%, 교역금액은 48%를 점하고 있다. 또한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 유일한 경제협력체일 뿐 아니라 1997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의 68%, 총해외투자의 65%를 차지하는 지역단위 최대의 경제파트너이다.

우리나라의 對APEC국가와의 수산물 교역액은 1997년말 현재 수출 13억 5,493만달러(총수출액의 90.8%), 수입 9억 2,027만달러(총수입액의 88.0%)로 무역수지는 4억 3,466만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출은 일본에,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하고 있다.

APEC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는 1997년 8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캐나다)에서 국가별로 희망 대상분야를 선정, 제출토록 함으로써 구체화되었는데 동년 11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15개 분야를 선정하되 이 중 수산물을 포함한 9개 분야에 대해서는 1998년 6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세부 시행계획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등이 수산물과 임산물의 조기자유화에 적극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실패하였고, 조기자유화의 핵심내용인 관세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WTO에서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기자유화의 이슈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에 대해서는 ① 2005년 12월 31일까지 무세화하되, ② 20% 이하는 조기폐지하고, ③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① 2007년 12월 31일까지 비관세조치를 폐지하

고 상당수 비관세조치는 조기에 폐지토록 하였다.

셋째, 보조금에 대해서는 ① 금지보조금은 조기폐지 하고, ② 1999년 9월까지 보조금 운영현황을 파악하며, ③ WTO협정에 부합토록 보조금 운영을 하도록 한다.

넷째, 위생조치(SPS)에 대해서는 ① 1999년 1월 1일까지 수산물에 적용되는 SPS조치를 확인하고, ② WTO/SPS협정에 부적합한 조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경제기술협력(Ecotech)에 대해서는 ① 1998년 11월까지 세부이행계획을 개발하고, ② 2003년 12월 31일까지 중요한 진전이 있도록 하며, ③ 1999년부터 연구시작 및 예산요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원관리협력에 대해서는 ① UN공해어업협정비준을 권장하고, ②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며, ③ 1998년부터 진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되 1999년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④ 이를 위해 FWG가 기존 연구사항을 정리하고 최신화하도록 한다.

1997년 APEC 각료회의에서 조기자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의 영세성, 수산자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수산물 조기자유화 반대를 주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우 교역상대국가가 일본,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본, 중국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8년 6월 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임업, 수산분야를 포함한 9개 전 분야에 대해 적극 참여입장을 표명하면서 조기자유화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유예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전 분야 참여시 수산분야 대상품목의 15%(HS 10단위 기준 48개 품목)가 조기자유화에서 제외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조기자유화가 예정대로 1999년부터 시행될 경우 수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성의 원칙에 입각해 유보품목을 국내요인(생산량, 생산액, 종사자수, 어업내 비중)과 국제요인(수입액, 관세징수액, 실행세율)을 동일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선정된 61개 품목을

다시 15%인 48개 품목으로 재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재선정을 위해서 생산자 잉여 감소액이 큰 품목을 우선하되 정부권장 양식산업, 지역경제 특화산업, 수입 의존도 등을 추가하여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APEC 조기자유화 논의가 일단 WTO로 넘겨졌으나 어떤 형태로 타결되든 간에 이로 인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을 사회적인 여의 관점에서 추정해 보았다. 우선 소비자잉여의 경우 전품목 관세철폐시 6,880억원, 민감품목 5개 유예시 4,693억원, 48개 품목 유예시 2,669억원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관세가 동반 철폐됨으로써 448억원의 수출증대 및 42억원의 생산자잉여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APEC 조기자유화는 생산자잉여 감소를 유발할 것인데 추정결과 전품목 관세철폐시 6,576억원, 5개 품목 유예시 4,509억원, 48개 품목 유예시 2,579억원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잉여변화를 종합할 때 전품목 관세철폐시 346억원, 5개 품목 유예시 184억원, 48개 품목 유예시 90억원의 사회적잉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생산자잉여 감소를 주요 어업별로 보면, 절대금액면에서는 5개 품목 유예시 근해안강망어업(257억원), 대형기저 쌍끌이어업(230억원), 대형트롤어업(164억원), 대형선망어업(144억원), 기선권현망어업(140억원), 근해채낚기어업(111억원), 근해통발어업(8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업별 영향계수를 통한 상대적인 영향을 보면 근해채낚기어업, 대형트롤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APEC 조기자유화로 인해 사회적잉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나 이러한 잉여증가가 수산분야의 잉여감소를 전제로 하여 실현되므로 금후 이에 상응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조기자유화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은 외국수산물 수입의 급증과 이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감소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어업경영체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수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수산분야 조기자유화에 대해 금후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무역정책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금후 협상에 대비한 분야별 협상전략으로서 첫째,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가 공식적으로 최종 제안한 48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 유예가 관철되도록 노력하되,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 금년도 APEC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5개 품목 유예는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큰 문제가 없으나 일본의 경우 9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도(IQ)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과의 공조나 견제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조금에 있어서는 금지보조금 및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허용보조금에 대한 지원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령어가의 조기은퇴, 어업소득 안정화,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 환경친화적 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위생조치에 대해서는 WTO 위생조치(SPS)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다섯째, 경제기술협력에 대해서는 조기자유화, 해양환경보전(환경친화적 수산업), 연안역의 효율적 관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원관리협력에 대해서는 현재 APEC 이외의 국제기구를 통해 활발히 논의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14개 수산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금후 기가입 기구에서의 활동강화와 함께 미가입 기구에서의 가입을 확대하되, 특히 동북아 어업자원관리기구의 설립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APEC 조기자유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역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수입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제도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검사·검역제도를 통해 비위생적인 외국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며,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단속범위를 소매업자 위주에서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민간 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교육·홍보강화가 필요하다.

다음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출선도수협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주력업체 육성, 생산어가 - 수출업체간 계열화 외에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수출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업별 생산액을 종속변수로, 출어비, 인건비 및 관리비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대형트롤어업과 근해통발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가, 대형기저 쌍끌이

어업과 대형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출어비와 인건비가, 근해안강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어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킬수록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은 생산요소별 탄성치와 구성비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생산요소 투입비율을 유지하되 생산요소별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대형기저 쌍끌이,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및 근해채낚기어업은 노동투하가 어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장비개량 등을 지양하되 어업인력의 적기,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승선회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 어업별로 공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방안으로서 첫째, 조기자유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우선적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대형기저 쌍끌이어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전업희망자 직업훈련으로서 수산업이 아닌 타산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업대상자를 시·도에서 접수를 받아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수산분야 내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수산진흥원이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산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김상겸,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KIEP, 1996.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한국의 전략」, 1998. 6.
3. 박성쾌·김정봉,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48, 1991. 12.
4. 송유철, 「APEC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과제」, KIEP, 1998. 10.
5. 수협중앙회, 「수협통계조사월보」, 1998.
6. 신영태, 「UR협상타결과 수산업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4. 1.
7. 신유균,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1996.
8. 옥영수·김성채, 「WT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24, 1995. 12.
9. 어명근 외, 「APEC과 농산물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12.
10. 유재원·이흥구,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KIEP 정책세미나, 1998. 6.
11. 이재옥 외, 「WTO 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 9, 1994. 12.
12.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13. ———, 「APEC과 한국」, 1994. 11.
14.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1996.
15. 정인교·표학길, 「WTO 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분석」, KIEP, 1996.
16. 통계청, 「통계에 나타난 APEC속의 한국」, 1998.
17. 홍성걸 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1.

18. 홍성걸 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1.
19. 해양수산부,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개혁 세부추진계획」, 1995. 3.
20. —————, 「수산진흥종합대책」, 1997. 8.
21.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1997.
22. —————, 「수산행정기본자료」, 1998.
23. —————, 「해양수산통계연보」, 1998.
24. —————, 「어업생산량통계연보」, 1997.
25.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1998.
26.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내부자료.
27. APEC, "Inventory of Fisheries Administrations and Organizations in APEC Members", 1997. 9.
28. ADB, *Financial Statistics*, 1998.
29.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8.
30. Young, Linda M. and Karen M. Huff, "Free Trade in the Pacific Rim : On What Ba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부 록]

1. 주요 민감품목 48개의 잉여추정

단위 : 톤

순 위	HS	품 명	가공제품 생산량	수율 (%)	총생산량 (생중량)	가공원료 수입량 (생중량)	국내생산량 (생중량)
1	0307-49-1020	오징어(냉동)	313,090	93	336.656	20,917	315.739
2	0303-79-1000	명태(냉동)	147,837	48	307.994	68,148	139.882
3	0303-79-3000	갈치(냉동)	14,064	52	27.046	19,997	39,369
4	0303-79-9095	민어(냉동)	-	-	-	-	1,177
5	0303-79-6000	조기(냉동)	22,325	52	42.933	14,713	28,220
6	0301-99-4000	돔(활어)	-	-	-	-	152
7	0301-99-9050	농어	-	-	-	-	1,501
8	0306-23-3000	새우(염장)	-	-	-	-	7,894
9	0307-29-1000	가리비(냉동)	-	-	-	-	167
10	0305-59-2000	멸치(건조)	39,098	26	150.377	1,273	149,104
11	0301-99-9070	미꾸라지	-	-	-	-	409
12	0303-79-9093	홍어(냉동)	-	-	-	-	3,223
13	0303-79-8000	꽁치(냉동)	18,836	43	43.805	13,265	30,539
14	0303-74-0000	고등어(냉동)	90,701	71	127.748	7,094	120,654
15	1605-90-9010	조미오징어	4,526	50	9.052	-	9,052
16	1604-14-1021	가다랭이통조림(기름)	-	-	-	-	23,185
17	0303-79-9020	복어(냉동)	1,456	76	1.916	1,509	406
18	0307-59-1010	문어(냉동)	-	-	-	-	4,984
19	0307-59-1020	낙지(냉동)	-	-	-	-	2,072
20	0307-91-1800	바지락(산것, 신냉)	-	-	-	-	26,432

단위 : 톤

순 위	HS	품 명	가공제품 생산량	수율 (%)	총생산량 (생중량)	가공원료 수입량 (생중량)	국내생산량 (생중량)
21	0302-69-3000	갈치(신냉)	-	-	-	-	39,369
22	0306-13-9000	기타냉동새우	-	-	-	-	5,517
23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	-	-	-	7,443
24	1605-90-1070	콜뱅이(통조림)	11,369	18	63,161	15,599	1,293
25	0303-79-9091	아귀(냉동)	-	-	-	-	2,523
26	0303-79-4010	옥돔	-	-	-	-	2,315
27	1604-14-1011	다랭이통조림(기름)	-	-	-	-	4,605
28	0307-91-1200	전복(산것, 신냉)	-	-	-	-	7
29	0302-69-9040	아귀(신냉)	-	-	-	-	2,523
30	0303-79-9070	불락(냉동)	-	-	-	-	5,197
31	0301-99-8000	넙치류(활어)	-	-	-	-	8,360
32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	-	-	-	39,966
33	0303-80-2010	명란(냉동)	-	-	-	-	1,461
34	0307-49-3000	오징어(건조)	-	-	-	-	62,809
35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	-	-	-	4,122
36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	-	-	-	7,614
37	0302-69-9020	복어(신냉)	-	-	-	-	6,782
38	0303-79-4090	기타돔	-	-	-	-	19,186
39	0302-69-4000	돔(신냉)	-	-	-	-	3,643
40	0301-92-9000	기타뱀장어	-	-	-	-	1,172
41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	-	-	-	2,003
42	1605-90-9030	콜뱅이	-	-	-	-	324
43	1604-14-1029	가다랭이통조림(기타)	-	-	-	-	34,778
44	0303-79-9010	삼치(냉동)	-	-	-	-	11,428
45	0306-13-1000	냉동새우살	-	-	-	-	2,786
46	1604-14-1019	다랭이(보일드)	-	-	-	-	3,070
47	0301-99-9091	활노래미	-	-	-	-	0
48	0307-91-1300	소라(산것, 신냉)	-	-	-	-	33

순 위	HS	품 명	가격 (원/kg)	가격 하락률 (t/1+t)	소비 증가량 (천원)	가격 하락액 (천원)	소비자 잉여증가 (백만원)	생산자 잉여감소 (백만원)	사회적 잉여증가 (백만원)
1	0307-49-1020	오징어(냉동)	1,089	0.29	42,210	311	104,807	98,240	6,567
2	0303-79-1000	명태(냉동)	2,520	0.23	15,104	582	85,739	81,347	4,392
3	0303-79-3000	갈치(냉동)	2,583	0.09	1,675	235	9,441	9,245	197
4	0303-79-9095	민어(냉동)	8,995	0.50	275	4,498	5,913	5,294	619
5	0303-79-6000	조기(냉동)	4,889	0.09	1,200	444	12,809	12,542	267
6	0301-99-4000	돔(활어)	6,412	0.50	36	3,206	544	487	57
7	0301-99-9050	농어	7,991	0.50	351	3,996	6,699	5,997	70230
8	0306-23-3000	새우(염장)	3,299	0.17	616	550	4,509	4,340	169
9	0307-29-1000	가리비(냉동)	5,332	0.33	26	1,777	320	297	23
10	0305-59-2000	멸치(건조)	946	0.17	11,628	158	24,425	23,509	917
11	0301-99-9070	미꾸라지	2,736	0.50	96	1,368	625	560	65
12	0303-79-9093	홍어(냉동)	3,805	0.41	621	1,567	5,536	5,050	486
13	0303-79-8000	꽁치(냉동)	1,817	0.33	4,763	606	19,939	18,497	1,442
14	0303-74-0000	고등어(냉동)	733	0.09	5,132	67	8,211	8,040	171
15	1605-90-9010	조미오징어	1,089	0.23	977	251	2,398	2,275	123
16	1604-14-1021	가다랭이통조림(기름)	606	0.24	2,630	147	3,599	3,406	193
17	0303-79-9020	복어(냉동)	3,598	0.29	54	1,028	446	418	28
18	0307-59-1010	문어(냉동)	4,991	0.17	389	832	4,308	4,146	162
19	0307-59-1020	낙지(냉동)	7,936	0.29	277	2,267	5,012	4,698	314
20	0307-91-1800	바지락(산것, 신냉)	1,251	0.17	2,061	209	5,726	5,511	215
21	0302-69-3000	갈치(신냉)	2,583	0.17	3,070	431	17,609	16,948	661
22	0306-13-9000	기타냉동새우	2,883	0.29	738	824	4,848	4,544	304
23	0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3,445	0.09	317	313	2,381	2,331	50
24	1605-90-1070	굴뱅이(통조림)	2,654	0.33	202	885	1,233	1,144	89

순 위	HS	품 명	가격 (원/kg)	가격 하락률 (t/1+t)	소비 증가량 (천원)	가격 하락액 (천원)	소비자 잉여증가 (백만원)	생산자 잉여감소 (백만원)	사회적 잉여증가 (백만원)
25	0303-79-9091	아귀(냉동)	3,420	0.09	107	311	801	784	17
26	0303-79-4010	옥돔	9,957	0.12	133	1,223	2,912	2,831	81
27	1604-14-1011	다랭이통조림(기름)	606	0.24	522	147	715	677	38
28	0307-91-1200	전복(산것, 신냉)	54,990	0.17	1	9,165	67	64	3
29	0302-69-9040	아귀(신냉)	3,420	0.17	197	570	1,494	1,438	56
30	0303-79-9070	볼락(냉동)	1,045	0.09	221	95	504	494	11
31	0301-99-8000	넙치류(활어)	9,478	0.09	356	862	7,356	7,203	153
32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2,520	0.23	4,315	582	24,497	23,242	1,255
33	0303-80-2010	명란(냉동)	5,046	0.12	84	620	931	905	26
34	0307-49-3000	오징어(건조)	1,089	0.09	2,672	99	6,350	6,218	132
35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1,408	0.09	175	128	539	528	11
36	0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262	0.09	324	115	892	874	19
37	0302-69-9020	복어(신냉)	3,598	0.17	529	600	4,226	4,067	159
38	0303-79-4090	기타돔	6,100	0.12	1,102	749	14,786	14,373	413
39	0302-69-4000	돔(신냉)	6,412	0.17	284	1,069	4,045	3,893	152
40	0301-92-9000	기타뱀장어	7,712	0.33	183	2,571	3,248	3,013	235
41	0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653	0.09	85	150	307	301	6
42	1605-90-9030	골뱅이	2,654	0.33	51	885	309	287	22
43	1604-14-1029	가다랭이통조림(기타)	606	0.24	3,945	147	5,399	5,109	290
44	0303-79-9010	삼치(냉동)	2,416	0.09	486	220	2,563	2,510	53
45	0306-13-1000	냉동새우살	3,299	0.17	217	550	1,592	1,532	59
46	1604-14-1019	다랭이(보일드)	606	0.24	348	147	477	451	26
47	0301-99-9091	활노래미	-	-	-	-	-	-	-
48	0307-91-1300	소라(산것, 신냉)	2,680	0.17	3	447	15	15	0.6

2. 어업별 어종별 조기자유화 영향지수

1) 대형트롤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오징어	43,542.997	95,064.255	45.8
갈 치	5,264.775	34,852.419	15.1
퀴 치	47.670	14,802.805	0.3
병 어	1,571.767	9,443.976	16.6
조 기	765.089	12,176.760	6.3
홍 어	1,964.327	4,775.275	41.1
멸 치	602.364	5,340.170	11.3
삼 치	351.401	2,592.368	13.6
고등어	179.793	2,549.374	7.1
전갱이	235.064	839.800	28.0
기 타	2,551.178	17,197.274	14.8
계	57,076.424	199,634.476	28.6

2)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조 기	4,113.921	83,537.048	4.9
갈 치	7,805.488	51,629.004	15.1
병 어	1,403.019	8,415.238	16.7
삼 치	2,371.954	17,491.840	13.6
민 어	5,072.607	2,302.720	220.3
오징어	1,571.139	3,286.602	47.8
붕장어	408.869	4,464.720	9.2
아 귀	404.501	3,142.980	12.9
고등어	384.104	5,575.931	6.9
홍 어	1,171.526	2,842.335	41.2
전갱이	56.846	571.200	10.0
기 타	8,279.292	53,443.176	15.5
계	33,043.265	236,702.794	14.0

3) 대형선망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고등어	7,093,661	102,101,769	6.9
전갱이	868,047	8,749,560	9.9
갈 치	1,126,295	7,508,781	15.0
정어리	339,713	3,736,824	9.1
오징어	1,571,139	3,361,743	46.7
삼 치	377,024	2,775,984	13.6
방 어	1,102,081	6,360,912	17.3
홍 어	732,204	1,776,935	41.2
쥐 치	2,357	730,892	0.3
기 타	2,608,000	16,641,994	15.7
계	15,820,522	153,745,394	10.3

4) 근해안강망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조 기	6,396,645	92,070,368	6.9
갈 치	7,595,944	50,355,585	15.1
젓새우	1,931,350	23,016,720	8.4
병 어	1,412,661	8,463,586	16.7
아 귀	822,338	6,378,300	12.9
복 어	343,695	2,014,880	17.1
쥐 치	1,886	591,888	0.3
기 타	14,960,897	95,240,616	15.7
계	33,465,417	278,131,943	12.0

5) 기선권현망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멸 치	13,678,676	118,988,826	11.5
기 타	351,603	2,289,268	15.4
계	14,030,279	121,278,094	11.6

6) 근해채낚기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오징어	43,655,222	95,345,217	45.8
갈 치	759,594	5,052,348	15.0
복 어	2,818,295	16,540,006	17.0
문 어	1,205,183	8,963,836	13.4
방 어	36,993	214,182	17.3
꽁 치	966,791	1,324,593	73.0
기 타	127,722	824,086	15.5
계	49,569,800	128,264,268	38.6

7) 근해통발어업

단위 : 천원, %

어 종	생산자잉여감소(A)	생산액(B)	A/B
붕장어	980,083	17,741,196	5.5
계 류	6,881,270	163,882,095	4.2
골뱅이	270,366	809,470	33.4
문 어	69,109	414,253	16.7
기 타	124,692	792,536	15.7
계	8,325,519	183,639,550	4.5

3. 수산제품별 수출표

제품별	어종별	수율(%) (원료 대 제품비)	처리형태	비 고
냉동품	일반어류	95~98	Round	생 물
	고 등 어	70~72	Fillet	"
	문 어	90~95	Round	"
	"	80	Dressed	"
	오 징 어	25~30	Dressed	동체만인 것
	복 어	74~78	Semi-Dressed	생 물
	참 치	80~92	Semi-Dressed	"
	"	40~47	Loin	"
	명 태	22~28	Fillet	원료수입냉동품
	"	45~50	Dressed	"
	아 귀	40~42	Dressed	생 물
	"	35~37	Pan Dressed	"
	청 어	51~52	Fillet	원료수입냉동품
	전 갱 이	38~40	Fillet	생 물
	학 공 치	40~45	Fillet	"
	보 리 멸	45~47	Fillet	"
	봉 장 어	50~55	Fillet	"
	꽃 게	83~90	Round	"
	"	70~80	Steak	"
	소 라	9~10	I.Q.F	각부원료
	골 뱅 이	35~37	I.Q.F	"
	패 주	12~13	I.Q.F	"
	개량조개	8~12	Block	자숙한 것
	바 지 락	10~23	Block	"
	굴	8~12	I.Q.F	생 물
	새우(대하)	94~95	Whole	"
		62~64	Headless	"
		52~54	P.D Tail off	"
		50~53	P.R Tail off	"
		56~59	P.D Tail on	"
		55~58	P.R Tail on	"

제품별	어종별	수율(%) (원료 대 제품비)	처리형태	비 고
	새우(중·하)	93~94	Whole	생 물
		55~57	Headless	"
		47~49	P.D Tail off	원료수입냉동품
		44~46	P.R Tail off	"
		51~53	P.D Tail on	생 물
		49~50	P.R Tail on	"
	새우(독새우)	70~73	Whole	원료수입냉동품
		55~57	Headless	생 물
		38~39	P.D Tail off	"
		33~35	P.R Tail off	"
		40~42	P.D Tail on	"
		37~39	P.R Tail on	"
건제품 (소건품)	명 태	23~25		각부원료
	멸 치	12~30		"
	오징어	20~25		"
	가오리	20		"
	(홍어)			
	새 우	12		자숙한 것
	굴	8~19		"
	상 어	35~42		"
	김	8~10		생 물
	문 어	20~25		원료 생물
	파 래	15~20		"
	미 역	10~12		"
	다시마	17~20		"
(염건품)	조기류	70		원료 생물
	갈 치	70		"
	새 우	12		"
	홍 어	25		"
	가자미	18		"

제품별	어종별	수율(%) (원료 대 제품비)	처리 형태	비 고
(자건품)	멸 치	25~28		원료생물
	해 삼	20		"
	새 우	25		"
	굴	34~35		원료는 각부를 제거한 것
	맛	25		원료 생물
	홍 합	25		"
	찐 톳	45~50		마른 톳을 원료로 한 것
염장품	어 류	75~80		원료 생물
염신품	성계젓	80~90		원료는 탈각한 것
	"	8~12		각부 원료인 것
	명 란	90~95		생란을 원료로 한 것
	굴(어리굴)	130~135		원료 생물
	오징어	60~70		"
	간미역	18~22		"
	꿀뚜기	70~75		"
조 미 가공품	오징어	49~52		원료 생물
	"	10~12		"
	쥐 치	9~11		"
	청 어	29		원료는 수입품
	조 기	35~36		원료 생물
	강달어	33~34		"
	명 태	20~25		"
	갯장어	42~45		"
	갈 치	33~35		"
	조미붕장어	15~16		"
	조미학공치포	18~20		"
	조미보리멸포	46~48		"

제품별	어종별	수율(%) (원료 대 제품비)	처리 형태	비 고
통조림품	꽁 치	54~56		원료 생물
	고등어	55~58		"
	방 어	55~58		"
	오징어	40~45		"
	게	15		갑판을 제거한 것
	어 단	55~60		원료 생물
	소라고동	8~10		"
	전 복	16		"
	굴혼제	4~5		"
	바지락	7~10		"
	굴뱅이	18		"
	홍 합	7~12		"
어 유 어간유	정유(고래)	30~40		원료 생물
	정어리유	13~16		"
	멸치유	13~15		"
	상어간유	60~65		원료 생간
	명태간유	20~25		"
	오징어장유	15~17		원료 내장
어 분	일반어분	14~20		원료 생물
해조류	우무가사리	25~30		원료 생물
	톳	18~24		"
한 천	실한천	22~28		마른 우무가사리류를 원료로 한 것
	가류한천	22~28		
수 산 피혁품	수산피혁	10	박피	생 물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생산물조사요령」, 1998.

4. 쿠알라룸푸르 선언문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KUALA LUMPUR MALAYSIA
18 NOVEMBER 1998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1. We, the Economic Leaders of APEC, meeting in Kuala Lumpur on 18 November 1998, renew our resolve towards creating a prosperous Asia-Pacific community where economic disparities among our peoples will be bridged b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our economies for growth, providing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flow of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y and by enhancing the capacities of our economies to participate and benefit fully from liberalization.

2. Our meeting in Kuala Lumpur takes place at a critical time. We need to deal urgently with the financial crisis which has spread beyond the APEC region. It has resulted in far reaching social costs, with the affected economies experiencing rising unemployment and falling real incomes, setting back decades of progress achieved in eliminating poverty and increasing education opportunities, as well as access to basic health 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We are resolved to work together to support an early and sustained recovery in the region, to contain the risks of contagion and prevent the possibility of a global recession.

3. We reaffirm our confidence in the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and prospects for recovery for the economies of the Asia Pacific. We believe our emphasis on prudent, growth-oriented macroeconomic policies, strengthen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cornerstones for renewed and sustainable growth. In particular, our emphasis on "Capacity Building" across the broad range of APEC activities this year is particularly relevant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confronting the region during this time. APEC's emphasi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luding skills development, technological upgrad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nd wider outreach to SMEs will strengthen our resilience and capability in overcoming these challenges and restoring stability and confidence to the region.

APEC – KEY CHALLENGES

Challenges of the Financial Crisis

4. Since we met in Vancouver in November last year, the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has weakened considerably. The regional financial crisis has had economic and social aftershocks more severe than earlier anticipated and similar problems have appear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several encouraging developments in our economies an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n recent months. The progress made by Indonesia, Korea, Philippines and Thailand in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reform programmes backed by an unprecedented degree of financial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sulted in a substantial degree of financial stability,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recovery in the APEC economies most directly affected by the crisis. In these economies:

- Exchange rates have remained relatively stable, and have strengthened in many of these economie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This has permitted substantial reductions in nominal interest rates to levels which, in some cases, are below those prevailing before the crisis.
- Fiscal policies have been adjusted with support from the IFIs to allow increased spending to support demand and employment.
- The initial acceleration in inflation that accompanied devaluation has been contained to moderate levels in most emerging Asian economies, and the rate of inflation is now decelerating across the region.
- Short-term external debt burdens have been reduced and reserves have begun to be replenished in many economies.
- Current account balances have moved into surplus, although most of the adjustments have come from reduced imports.
- Output declines have been more extensive than many had anticipated, but are now moderating.
- Several other economies including Indonesia, Korea, and Thailand, have made impressive efforts to strengthen and restructure their respectiv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5. In China, interest rates have been eased and an expansionary fiscal package is being implemented to farther stimulate economic growth. Maintenance of the renminbi exchange rate has provided an important anchor to help secure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6. In recent weeks, these developments have been reinforced by:

- the reduction of short-term interest rates in a number of industrialized economies;
- Japan's commitment of substantial public resources to strengthen its financial system. The authorities have made clear their intention that the essential swift and effective action in the banking sector, including the recapitalisation of bank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will be taken as a matter of urgency. This action, together with a sustained boost to domestic demand is key to the restoration of market confidence and growth not just in Japan but in the whole Asian region;
- the progress made towards providing additional resources to the IMF and
- the G-7's agreemen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new IMF facility to deal with contagion by providing a precautionary line of credit for economies with sound policies supported by the IMF.

7. But important challenges remain. To meet these challenges,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a cooperative growth strategy with the following dimensions:

- Growth-oriented prudent macroeconomic policies, appropriate to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each of our economies;
- Expanded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enerate employment and to build and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protect the poor and vulnerable;

- A comprehensive programme of support for efforts to strengthen financial systems, restore trade finance, and accelerate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 New approaches to catalyse the return of stable and sustainable private capital flows into the region;
- A renewed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of achiev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within APEC; and
- Looking toward the longer-term, urgent work among ourselves and with other economies and institution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is context, we welcome Japan's proposed financial package of US\$30 billion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efforts in Asia.

We also welcome the multilateral initiative to revitalise private sector growth announced this week by Japan and the US in conjunction with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We believe these initiatives will significantly aid our joint efforts to promote recovery and growth in the region and we look forward to their early implementation.

Growth-oriented Macro Policies

8. Each APEC economy has a role to play in accelerating recovery in the region by directing policies with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or achieving robust growth, contributing to a supportive external environment, and keeping markets open.

- The major industrialised economies need to create or sustain conditions for strong domestic demand-led growth.
- For the APEC economies most directly affected by the crisi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and accelerate structural reforms

within a framework of prudent, growth-oriented macroeconomic policies.

- Other economies in the region where growth may be moderate or slowing also need to continue efforts to implement appropriately stimulative macroeconomic policies which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and sound levels of domestic savings, while also working to address financial sector reforms in we" that build investor confidence.

International Support for Employment and Social Safety Nets

9. We note that the financial crisis has resulted in far reaching social costs. In addition to rising unemployment, and falling real incomes, the financial crisis could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poverty in the most seriously affected economies. We therefore endorse the greater flexibility of IMF programmes, and welcome efforts by the World Bank to triple and the ADB to double their social sector lending.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10. Revitalising the private sector by helping to recapitalise financial institutions, addressing companies' heavy debt burdens, and restoring their access to trade and working capital financing are critical to achieving renewed economic growth in the economies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crisis.

In this regard, we will encourag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rough mechanisms to:

- mobilise additional assistance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accelerated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cluding through us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guarantees and other innovative mechanisms:

- decrease the availability of working capital and trade finance including through cooperative efforts between export credit and insurance agencies and between such bilateral institutions and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support efforts to mobilise significant private sector equity capital and investment to help distressed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APEC region successfully restructure both their finances and their operations; and review and, in line with the respective circumstances, remove regulatory and legal impediments to the ability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constructively in the restructuring of the debts of private sector borrowers, while encouraging export credit and insurance agencies to play a more catalytic role in encouraging such restructuring.

Catalysing Private Capital Flows

11. In order for the region to fully recover from the crisis, we must be able to attract growth-enhancing, stable capital flows into the region. The increased risk aversion by investors as well as by major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has led to a sharp reduction in the flow of capital into East Asian and other emerging market economies without respect to the diversity of prospects among the economies and their long-term growth potential. In response to this challenge, we support efforts by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o use innovative financial instruments to help catalyse and leverage private sector capital

flows.

In light of the concerns expressed about the role of the recent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we call for a review of their practices to promote greater effectiveness an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capital flows.

In particular, we also need to strengthen the preparedness of our own domestic financial systems to withstand the potentially destabilizing impact of short-term flows and to ensure the allocation of long-term capital to productive uses.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2. While our immediate priority must be to mitigate the adverse social impacts of the crisis and to restore financial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we must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so as to better prevent future financial instability and to resolve crises more effectively when they occur. We agree that now is the time to effect chang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o as to capture the full benefits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global markets, while minimising the risk of destructive disruptions. We fully agree that strengthened global arrangements are important to enable us to benefit from increased globalisation while avoiding the difficulties many of our members are currently facing.

In particular, we welcome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IMF facility for a precautionary line of credit for economies

with sound policies supported by the IMF that are threatened by contagion.

The close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industrialised economies and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is vital to the success of these effort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PEC has already played a major role in this regard notably in promoting improvem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bility to respond to crises, through instruments such as the IMF's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We pledge to continue such collaboration.

Challenges to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13. The expa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remain essential elements of our economic recovery and we reiterate the need for liberal and open markets and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vestment. We consider it particularly important tha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early progress be made on broad-based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the WTO, achieving an overall balance of interests of all member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uphold and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ensure fair rules and benefits for all. We urge the prompt accession to the WTO of applicants in accordance with WTO rules, with a view towards achieving the universality of WTO membership.

Challenges to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4. Given APEC's diversity and differing levels of development, globalisation and liberalisation must be complemented by initiatives that build confidence and increase capacity to benefit fully from these processes in order to narrow the disparities in income and wealth. Such initiatives will not only strengthen systemic capacities but will also support APEC's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efforts. The challenge will be to continue to achieve a balance in all three pillars of APEC cooperation to ensure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has acquired added urgenc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KEY ACHIEVEMENTS IN 1998

15. We in APEC have continually given emphasis to result and outcome-oriented individual and cooperative efforts through the APEC approach. As we move into the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after Subic and Vancouver, we note the substantial achievements made in advancing APEC cooperation in ou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agenda as well as progress in capacity building efforts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6. We have reflected on the progress and the results achieved throughout the year as reported to us by our Ministers and we express satisfaction in fulfilling the tasks we set for ourselves when we last met in Vancouver. We welcome the outcomes of the various sectoral Ministerial Meetings held throughout the year

and direct APEC fore to follow up on the recommendations.

17. Towards realising the goal of fre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Osaka Action Agenda, we pledge to continue improvements and implementation of our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18. We commend the work of our Minister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resources, capital and technology amongst our economies. We will improve the facilitation process to promote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through strengthening members' capacities, including adopting policies to harness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19.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on the EVSL package - He of nine sectors. We instruct Ministers of participating economies to implement the agreement reached on these sectors and further advance work on the remaining six sectors, demonstrating our commitment to the liberalisation process amidst the financial crisis in the region.

20. We affirm that progressing all three pillars of cooperation in APEC will strengthen the foundations for further growth. We commend progress in the priority area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harnessing technologies of the future. We note the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rocess including the work underway in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instruct Ministers to give further focus to strengthen coordination in ECOTECH activities and intensity work in the priority areas. We believe the contribution of the business/private sector in

ECOTECH activities will enhance and strengthen our efforts to advance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genda and welcome ABAC's commitment in this area through the Partnership for Equitable Growth (PEG).

21. As the APEC community enters into its tenth year of cooperation, we recognise the need to review its activities, structure and mechanisms in order to ensure that APEC delivers focused and outcome-oriented results in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We observe the proliferation of APEC fore and meetings and endorse work to further streamline the APEC management process. We instruct Ministers to complete the review of the APEC process by 1999 and for implementation of measures in 2000.

22. We recognise that the involvement of the business/private sector is an important feature of APEC work and endorse its broader participation in APEC activities. We direct Ministers to enhance business/private involvement, within existing guidelines, in relevant APEC activities. We welcome efforts to improve business mobility through the APEC Business Travel Card scheme and the collective commitment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multiple entry visas or permits to business travellers. We also welcome the recommendations by ABAC and instruct our Ministers to study ABAC's proposals, including the APEC Food System.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SUSTAINED GROWTH INTO THE 21st CENTURY

23. We are firmly resolved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financial systems individually and globally, trade and investment flows,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s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conomic infrastructure, and business and commercial links so as to provide the base and set the pace for sustained growth into the 21st century.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24. Given the ramifications of the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social vulnerabilities, we agree that as a matter of high priority, APEC should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the social impacts of the crisis. In particular, we direct our Ministers to work with the World Bank, the ADB,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where appropriate,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o formulate strategies of concrete actions aimed a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a report at our next meeting.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Individually and Globally

25. We recognise that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system is fundamental to the realisation of APEC's goal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by the year 2010/2020.

We welcome the work undertaken in several fora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 particular take note of

the proposals made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strengthen national financial systems and market infrastructure; and to improve co-ordination and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prevention and orderly resolu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We believe that there would be considerable value in continuing this work in a process involving both industrialised and emerging markets economies. We agree that a forum such as an expanded G22 would be appropriate for this purpose. We also call on our Finance Ministers to develop, on an expedited basis measures to implement these proposals. We ask for a report at our next meeting on the outcomes of such deliberations within APEC and elsewhere.

We attach special urgency to examine the scope for strengthened prudential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industrialised economies to promote safe and sustainable capital flows, to encourage sound analysis and better risk assessment; to examine the questions of appropriate transparency and disclosure standards for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involved i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such as investment banks, hedge funds and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operations of highly leveraged and off-shore institutions. We call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a taskforce including the systemically significant economies to develop practical proposals in these areas. We also call for work to proceed immediately in an appropriately constituted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improved crisis management including orderly debt workout arrangements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proposals can be discussed in the forum for endorsement at the leaders' level and subsequent implementation.

26. The financial instability in Asia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trong, resilient and well-regulated domestic financial markets within the framework of a st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e therefore call for the adoption by member economies of internationally recognised principles for enhancing supervision of banking systems and securities markets. Among these are the Basle Principles on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and tho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n this connection, we welcome work by our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explore ways to assess the adequacy of and to help reinforce efforts to strengthen financial supervisory regimes in member economies, including by identifying ways to record in APEC their progress in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codes/best practices. We look forward to a report at our next meeting on both these directives.

We also direct our Finance Ministers to look for innovative ways to promote the recovery of capital flows into the region, including through partnerships among member economies, the private sector and collaborative efforts with the World Bank, the ADB and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We look forward to concrete results at our next meeting.

27. We record our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made by our Finance Ministers in promoting the Cebu collaborative initiatives to develop strong, resilient and stable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in our region and we look forward to regular updat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nitiatives at the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We endorse the move by our Finance Ministers to address the need for freer and stable capital flows into the region

and in this regard direct our Finance Ministers to incorporate the useful lessons of the past 18 months as they endeavour to develop a pragmatic Voluntary Action Plan as well as formulate appropriate guidelines for monitoring capital flows, including short-term flows.

28. We commend increased efforts to assist crisis-affected regional economies develop sufficient capacity to rebuild their economies and overcome current difficulties. We welcome the Australian initiative on Economic Governance Capacity Building and the areas proposed for enhanced capacity building joint activities. We also welcome the Singapore initiative which will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s at the IMF-Singapore Regional Training Institute an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ested partners and institutions. We encourage economies to pursue such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29. We ar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improving economic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refore, we welcome a new collaborative initiative agreed by Finance Ministers at Kananaskis to examine ways of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region. We also welcome a new initiative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ond markets. We applaud the initiative of the Financiers Group to create private secto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 for financiers across the APEC region, which we believe, will complement the effort of the member economies in this area. We direct our Finance Ministers to focus efforts on advancing progress on ad these initiatives and look forward to a report on concrete outcomes at our next meeting.

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Flows

30. We welcom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trade and investment flows in the region. These include work on competition policy and regulatory reforms as well as rapid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further enhance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trade and investment flow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adoption of the menu of options and measures on investment and Korea's initiative to host an APEC FDI Mart in Seoul in June 1999.

We note that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tourism have considerable potential to contribute to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next century. We recognise the need for efforts to maximise the contribution of these sectors to the prosperity of APEC economies.

Strengthening the Science and Technological Base

31. We endorse the 1998 APEC Agenda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Cooperation into the 21st century which will facilitate our vision of enhancing APEC's ability to harness technologies for the future and catalyse the development of strong sustainabl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s and partnership. We take note of the principles, mechanisms and areas for joint actions set out therein and instruct Ministers to undertake due efforts to implement the agenda.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 APEC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Cooperation Fund.

Strengthen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32. We reiterate our common belief tha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a key and integral factor to the realisation of all efforts towards a capacity for sustained growth in the economies of the Asia-Pacific into the 21st century. We have made a commitment to a framework to advan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our work plan. We therefore endorse the attached 1998 Kuala Lumpur Action Programme on Skills Development in APEC as a significant inroad into public-business collaborative partnership in skills development. This programme recognises the value of the contribution of the business sector and underscores APEC's continued broadening of its outreach to the business community. We welcome the initiatives of member economies and further instruct Ministers to undertake concerted effort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ion Programme. In this regard, we welcome Singapore's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training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region.

We support continued efforts to further the role of women in the APEC process. To this end, we instruct Ministers to develop a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Women in APEC.

Strengthening the Economic Infrastructure

33. We reaffirm tha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our economic infrastructure is an essential component towards the realization of our goals of sustainable and equitabl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the APEC community. We commend in particular

commitment given throughout 1998 to further strengthen and develop economic infrastructure. We welcome the Natural Gas Initiative approved by the Energy Ministers at Okinawa. We acknowledge the progress that is ongo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ncouver Framework For Enhanc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We welcome progress being made in advancing the initiative of creating the 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and endorse work to further advance the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our workplan including cleaner producti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ities. We endorse the joint actions to be launched in the areas of food, energy and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of the APEC community. We instruct that Ministers undertake efforts to develop the implementation of these joint actions. We commend the initiative of Ministers in establishing the APEC Framework for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on Emergency preparedness, which seeks to foster cooperation in longer-term capacity building in preventive and responsive measures for unexpected natural emergency disasters.

Strengthening Business and Commercial Links

34. SMEs are a major stakeholder in APEC comprising over 95 percent of an enterprises, employing up to 80 percent of the work force and contribute 30 to 60 percent of the GNP of APEC

economies. We stress the importance of harnessing and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SMEs to contribute to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We commend Ministers for producing the Integrated Plan of Action for DIME Development (SPAR) that sets out the blueprint of strategic directions for both enterprise and entrepreneur development through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We instruct Ministers to focus on further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the dynamism of SMEs and to give priority to the implementation of joint actions of the SPAN and encourage economies to adopt individual actions to strengthen the development of SMEs.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more concrete outcomes at our next meeting.

35. We commend Ministers for formulating the EPI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containing broad themes and cooperative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region. We recognise that the Y2K problem has the potential to cause significant economic, trade and financial disruption. We agree that all economies need to enhance awareness and implement necessary measures to resolve this problem on an accelerated basis.

We are confident that APEC, bound together by our commitment to our goals and our resolve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for growth, will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KUALA LUMPUR, MALAYSIA
18 November 1998